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장애인실태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0. 10.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인실태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한국통계진흥원 이 동 명 ㉠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연구원	조원일(경기대학교 교수)
연구원 (표본설계진단)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오제호(경기대학교 석사과정)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장애인실태조사」 2010 정기통계품질진단
주 제 어	국가통계, 통계품질, 장애인실태조사, 조사통계
연구기간	2010.04.07 ~ 2010.10.29 (7개월)
연구기관	(재)한국통계진흥원
연구진구성	조원일(경기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을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3년마다 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본 통계는 전국의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집단 설정 후 면접 및 우편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통계의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적합성,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략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본 통계는 이번이 7회째 조사로서 장애인실태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자료로 어떠한 관련 조사보다 지명도 및 활용도가 높고, 통계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된다. ○ 그러나 6차 실태조사 때까지와 달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비롯하여 현재의 면접에 있어 조사 방식의 타당성, 통계작성 기획 및 설계의 미흡한 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작성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p>첫째, 통계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무성 강화의 일환으로 조사대상을 미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의 낭비를 이유로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WHO에서 추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출현율은 10%임에도 우리나라의 2005년 조사시의 출현율은 4.59%였으며, 2008년도 조사에서는 그나마 미등록장애인마저 배제되어 추정률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과반수에 가까운 장애인들의 실태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p> <p>둘째, 조사결과물예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통계 이용자들이 제기한 통계 결과물예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쇄물 위주의 자료 유포 및 원 데이터의 유료화로 인한 접근의 폐쇄성이다. 또한 조사완료와 공표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가능한 단축시켜야 하며, 공표시기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입안되는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p> <p>셋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조사 내용의 충실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까지 고려한 장애의 생애주기별 조사 설계를 염두해야 한다. 또한 조사 시점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조사 항목도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p> <p>넷째, 장애관련 통계의 통합적 이용을 통한 효율성의 고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조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와 그에 따른 자료의 개방적 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p>

품질보고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품질보고서

2010. 10.

차 례

1. 개요	i
2. 통계품질정보	iii
가. 차원별 품질 상태	iii
(1) 관련성	iii
(2) 정확성	iv
(3) 시의성/정시성	v
(4) 비교성	vi
(5) 일관성	vi
(6) 접근성/명확성	vii
나. 기타 품질관련 정보	viii
3. 결론	ix

1. 개요

품질보고서란 진단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해당 통계의 차원별 품질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말한다. 품질보고서는 통계 이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통계이용자는 통계의 강점과 한계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통계품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는 작성하는 통계의 장·단점을 알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통계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주 상세한 품질보고서가 필요하다. 본 품질보고서는 통계이용자들을 위해 이용하는 통계의 질적 품질정보를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 품질보고서로서 각 부문별 진단결과를 단순히 요약하거나 진단점수를 제시하기보다는 전 진단과정에서 수집된 각종자료 전문가나 이용자의 의견 등 진단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판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품질보고서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정기품질진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사회복지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주변성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누구도 좀처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은 통계적으로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에 우리들은 노인이 된 후의 우리들의 삶과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 전제로서 노인 삶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데 관용적이 된다. 이는 동시에 장애인같은 소수자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욕구 파악의 노정이 험난함을 예측케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곤란함과 그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의에 비추어 본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면서도 최선의 장애인 분야 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며, 이 경우 진단대상 통계의 품질을 아래의 준거에 비추어 진단하였다.

첫째,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품

질차원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둘째, 품질진단에 대한 절차로 품질기반진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등 5단계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품질진단 주요 부문별로 통계품질의 상태를 진단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품질개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통계 업무로, 장애인의 일반 특성,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정한 기간에 보도 자료와 간행물로 공표하는 통계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하여 통계품질진단 부문별로 통계품질의 상태를 진단하여 “장애인실태조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3년마다 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본 통계는 전국의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집단 설정 후 면접 및 우편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본 통계는 이번이 7회째 조사로서 장애인실태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자료로 어떠한 관련조사보다 지명도 및 활용도가 높고, 통계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6차 실태조사 때까지와 달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비롯하여 현재의 면접에 있어 조사 방식의 타당성, 통계작성 기획 및 설계의 미흡한 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작성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통계품질정보

가. 차원별 품질 상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해 연구진이 품질차원별로 진단한 결과는 대체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차원을 낮은 순대로 나타내면 시의성/정시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일관성이었으며, 평균 이상의 차원을 높은 순대로 나타내면 관련성, 정확성의 순이었다. 6가지 품질차원에 대한 평가의 순위는 외부진단과 동일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차원별 품질 상태를 내부 및 외부진단, 연구진진단에 FGI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차원별 품질 상태를 내부 및 외부진단, 연구진진단에 FGI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1) 관련성

관련성은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작성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먼저 본 통계의 작성목적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잘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와는 달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통계 이용자에게 매우 한정된 정보밖에 제공할 수 없으며, 본 통계의 관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이는 애당초 통계작성기관의 의도가 아닌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므로, 통계작성기관의 잘못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작성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의 파악 여부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은 통계작성의 기획부터 결과

물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용어 등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해서는 조사자료 제공시 제공자의 정보를 예측할 수 없도록 식별 정도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 상당 부분 개인식별 정보가 많이 유지된 채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7천명의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개인식별 정보의 유출가능성은 이전 조사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선 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 후에 원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계작성 체계의 관리 측면에서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 조사의 데이터 구입에 대해선 무상 제공에 대한 요구가 끊임이 없으나 대학원생 개방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용역수행기관으로서 조사 생산물을 기관에서 유료관리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확성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함으로써 작성되는데 정확성은 이러한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이다. 이 진단의 절차는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과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에 대해 진단한다. 재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재조사 불가 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다.

먼저 통계작성의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적어도 법적 기준에서 정한 조사 항목에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해 조사하는 것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궁리 여하에 따라서는 전년도 통계조사 항목을 주로 이용하는 관행

에서 벗어나 장애인 환경이 변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표의 이해 편의도를 위한 항목은 대체로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이나 조사항목이 너무 많아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다. 조사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기하는 편이었으며,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조사 관련지표도 작성하고 있었다.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적정한 표본규모로 설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이전 조사와 달리 등록장애인만으로 한정된 결과 표본규모가 1/10로 줄어든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조사원의 조사시에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진에서 외부전문가는 의료직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적 판단 이외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원에 대한 1일 급여가 1일 43,750원으로 책정된 것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문적 조사원의 확보와 그에 따른 정당한 재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는 자료입력 지침서를 두고는 있었으나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응답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 분석표만이 제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았다. 모수 추정시의 추정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외부 검증은 없었다.

(3) 시의성/정시성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보고서 작성완료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공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가 해를 넘겨 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사시점을 앞당겨 연내에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

요가 있으며, 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에서 최대 3개월 이내의 공표시기 또한 충분히 조정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이에 공표시기의 단축이 요망된다.

(4) 비교성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의 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근거로 집계되어 서로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요소이다. 이 품질차원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먼저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항목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라는 환경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제 기준(예, ICF)을 따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기준의 채택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 조사 항목만으로 매우 방대하여 종단적 자료까지 제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매우 급변하여 시계열 자료의 비교 자체가 곤란한 이유도 있다.

향후 횡단적뿐만 아니라 종단적 비교를 위해서도 시계열 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 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학계 및 이용자집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필수적인 시계열 자료를 확인해 나가면서 점차로 비교 항목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관련 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생략한다면 시계열 자료의 제공을 위한 현실적 제약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장애인실태조사 자체에 집중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 사회 등 타 분야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것이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일관성

서로 다른 출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지만 동일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통계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이나 첨부로 게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예-장애인고용패널)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부록에 동일 주제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표를 수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보다 양질의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계결과의 통계표간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접근성/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활용가능한 통계표와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말한다. 먼저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간행물에 조사개요,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 정보,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통계표 설명자료 등을 수록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장애인실태조사 시의 조사지침 등 자료수집 시의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조사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계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은 이용자에게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2008년 조사의 경우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없다. 향후 개편 내용에 따른 과정, 방법, 결과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와 이와 내부진단과 외부진단 및 연구진의 의견차가 매우 컸다. 내부진단에서는 공표를 한 이후에 자료를 중앙담당부처 홈페이지에

수룩하고 있으며, 외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계 원자료는 수집 후 입력이 개괄적으로 완료되는 시점부터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최종완료시까지 통계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 수집 후 보고서 완료시까지의 시점에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여 통계 원자료의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통계 원자료가 상당부분 유상으로 공개되는 결과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므로, 통계 원자료의 무상제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나. 기타 품질관련 정보

상기의 6가지 품질차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통계의 품질상태를 판단하는데 참조가 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비밀보호에 관해서는 조사표 표지에 통계법에 의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공지하고 있다. 조사원의 법적 비밀보호 서약 서명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이전에 조사 관련 비밀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한편 외부 사용자가 연구목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제공시 조사표상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알 수 없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시군구 번호'와 '읍면동 번호'를 '제가 또는 시설', '시설 유형'의 정보, 그 외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결합시키면 충분히 응답자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2008년 조사는 7,000명을 총수로 조사되었는데, 전국 시군별로 나누면 한 시군에 30여명을 조사한 꼴이 되고 15개 장애 범주를 고려하면 2명 꼴이 되어 개인 정보의 기밀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 외 결과표의 비밀보호 셀 결정 규칙, 부차적 누설 탐지 및 방지 절차 등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급 과정에서의 비밀보호 보장 절차 등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투명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자료용도 및 비밀보호 규정은 조사 진행에 앞서 응답자에게 공지하고 있었다. 통계적 광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비정

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발견된 착오의 수정 여부에 있어서는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가입률 오류 정정을 들 수 있다.

셋째, 보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자료 취득은 모두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며, 완료된 조사표는 본 기관의 조사표 보관부서로 의뢰되어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실태조사 통계품질 상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국가적 장애인 복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미등록장애인까지로 조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 및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와 당사자단체 등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계 용역 수행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은 조사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 장애의 경감 내지 해소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있어 아동기 때부터의 장애등록은 희망의 포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애라는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장애인등록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예로 정신장애의 하나인 우울증으로 실제 자살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떳떳하게 공표하고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에서 그들의 생활 실태가 어떠하며, 그에 따라 어떠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것이다.

둘째, 자료 유포 및 접근의 확대와 원자료 무상 공개를 통한 조사결과물에의 접근성 및 명확성 강화이다. 본 통계 이용자들이 제기한 통계 결과물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자료 유포 및 접근의 폐쇄성이다. 장애인실태조사의 발간형태는 대체로 인쇄물로, 표적 집단면접이나 외부진단평가 공히 웹 사이트 공개(음성파일 포함)나 CD 등 이용자가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공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자료 이용시 통계작성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가통계를 용역수행기관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장애관련 조사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것에 비해 매우 폐쇄적이며, 그 결과 자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완료와 공표까지의 갭이 다소 길며, 공표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장애가 매우 다양하면서도 중복장애의 경향이 점점 농후해지는 현실에 있어 조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기관에서 세세히 분석까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원자료는 코딩과 즉시 공개하고, 그 활용에 관해선 해당 관계자들에게 맡겨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공표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기에 있어서는 조사완료부터 공표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당해연도 정책입안시에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에 대해 그 세부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 항목의 문제점도 시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조사 내용의 비교성 강화이다. 장애인실태조사가 시대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그 조사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장애의 생애주기별 조사 설계를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본래 성인 장애인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에 대한 조사 항목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진전되는

실정 속에 이들 양 극단의 연령에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그에 따른 욕구 파악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조사 시점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조사 항목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이들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유연한 변화의 도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관련 통계의 통합적 이용을 통한 일관성의 강화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실 상황에서 장애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기존 조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의 횡적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누가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중복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와 그 욕구의 다양함으로 인한 관계 부처의 다양성에서 시사되듯이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기관 사이의 연계는 불가결하다. 예를 들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미등록 장애인에 관한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밀접한 자료 공유로 일정 부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 생산 시점을 앞당기고 생산에서 공표까지의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시행되고 결과 보고서가 해를 넘겨 출간되어 대체로 3/4분기에 이루어지는 각종 장애인정책 수립 시기에 맞지 않아 중요한 정책 근거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미하였다. 이에 조사시점을 연초로 앞당기고, 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공표시기 또한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제 2 절 통계 개요	4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8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16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요약	16
제 2 절 진단결과 종합	26
제 3 절 통계품질 개선방안	82
제 3 장 발전전략 및 로드맵	86
제 1 절 해외사례	86
제 2 절 발전전략	105
제 3 절 로드맵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16

표 차례

<표1> 진단부문별 진단방법 및 배경	10
<표2> 장애인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FGI) 개최 내용	31
<표3>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	38
<표4> 통계자료 이용빈도(용도)	39
<표5>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	40
<표6> 통계자료의 시계열 비교 편리성	41
<표7>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신뢰성	43
<표8> 통계자료의 비용대비 품질	44
<표9>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	44
<표10> 통계 품질 변화양상	45
<표11> 종합만족도 산출결과	46
<표12> 작성절차별 외부진단 결과	61
<표13> 작성절차별 점수표	62
<표14> 품질차원별 외부진단 결과	64
<표15>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종합	67
<표16>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 종합	71
<표17> 공표자료 오류 점검사항	76
<표18>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사항	77
<표19>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결과	80
<표20> 장애인실태조사의 향후 개선방안	82
<표21>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의 목차	91
<표22> 일본 장애인백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자료의 예	94
<표23> 일본 장애인백서의 내용 구성	96
<표24> 2008년도 동경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	101
<표25> 장애인실태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로드맵	113

그림 차례

<그림1> 품질진단 업무 흐름도(Flow Chart)	9
<그림2> 이용자 만족도 - 개선영역	47
<그림3> 내부 및 외부 진단의 절차별 점수 비교	66
<그림4> 내부 및 외부 진단의 품질차원별 점수 비교	66
<그림5>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88
<그림6>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	90
<그림7> 일본 장애인백서	93

제 1 장 개요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진단의 목적

21C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바야흐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단순한 지식의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평가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통계는 지식정보 인프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써 정부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등의 기반이 되므로 국가 통계의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등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과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통계품질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통계는 통계의 생산, 가공, 보급에 이르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품질이 좋아야 하며, 그 사용가치가 높아야 한다. 국가통계의 작성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때 정책수립과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국가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은 국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국가의 미래설계, 지역개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국가 통계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한편 국가 선진화는 반드시 경제의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현대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즉 노인이

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책무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국가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사회복지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주변성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통계적으로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에 우리들은 노인이 된 후의 우리들의 삶과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 전제로서 노인 삶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데 관용적이 된다. 이는 동시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욕구 파악의 노정이 험난함을 예측케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장애인 문제가 갖는 복잡성 내지 역동성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품질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면서도 최신의 장애인 분야 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며, 진단대상 통계의 품질을 아래의 준거에 비추어 진단하였다.

첫째,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품질차원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둘째, 품질진단에 대한 절차로 품질기반진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수집 자료의 정확성 진단,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등 5단계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품질진단 주요 부문별로 통계품질의 상태를 진단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품질개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통계 업무로, 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 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정한 기간에 보도 자료와 간행물로 공표하는 통계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하여 통계품질진단 부문별로 통계품질의 상태를 진단하여 “장애인실태조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통계체제 구축을 위한 통계의 품질관리는 왜 필요한 것인가?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가 필요하듯,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s Quality Management)가 필요하다. 통계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 좋은 통계는 국가 경영에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둘째, 지식 정보화 사회는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셋째, 지식은 국력과 직결되며, 신뢰성 있는 통계는 지식창출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넷째, 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홍수 사회에서는 정확한 통계 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통계 개요

1. 진단 대상통계 개요

가. 작성목적, 통계종류 및 승인번호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곱 번째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승인 일반 조사 통계이며, 승인번호는 제 11732호이다.

나. 작성대상

이 통계의 작성 대상은 크게 장애인 개별조사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장애인 개별조사는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으로 208개 표본 읍면동에서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12,342명의 등록장애인 중 7,000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의 경우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 67,110명에 대한 우편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작성주기, 작성기간, 조사대상기간

이 통계의 작성주기는 1980년 첫 통계의 공표부터 2005년도까지 5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작성주기가 변경되었다.

2007년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2008년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 기준일을 기점으로 1주일에서 1년간(등록장애인 현황 조사의 경우는 3년)에 걸쳐 질문 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라. 작성사항

이 통계에서 조사할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작성방법 및 체계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1980년 5년 주기로 시행된 후 2005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조사의 모집단은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으로, 표본의 크기는 208개 표본 읍면동에서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12,342명의 등록장애인이다. 조사기간 2008년 9월 6일~11월 30일(약 80일) 중에 총 7,000명의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는 시설 장애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바. 표본추출방법

○ 장애인개별조사 :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DB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표본대상자들이 매우 산재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표본을 추출하기에는 조사 및 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직접적인 층화추출보다는 층화집락 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전국 16개 시·도별 읍면동을 1단계 추출단위(PSU)로 결정하여 각 지역별 읍면동수에 비례하도록 표본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전국 3,573개 읍면동 중에서 208개의 표본 읍면동을 추출할 경우 95% 신뢰도 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0.069로서 약 7%의 허용오차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표본수를 고려한 방식은 전국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고려하여 표본집락을 단순임의 추출할 경우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본 읍면동을 208개 추출하고 이들 표본 읍면동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층화 이중추출(stratified two-phas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조사는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 872개 시설(81.6%) 거주자 67,11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1.4%인 34,4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의 등록장애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심층조사를 수행한 점은 이전의 조사와는 다른 점이며, 그 외 시설의 일반현황 등에 관한 조사는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로 우편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사. 공표방법

보건복지부에 집계된 본 통계는 '장애인실태조사' 보도 자료와 인쇄물로 공표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선 열람할 수 없다.

2. 통계의 특징, 중요성 및 활용가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 2005년 제 6차 조사 이후 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적인 성격의 실태조사로서 장애인복지 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활용가치가 있다.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1. 품질진단 내용

통계품질진단 작업은 통계청의 품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한다. 통계청의 품질관리체계는 품질진단대상에 대하여 6가지 측면에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품질관리방식은 국제적인 품질경영 ISO인증을 받은 것이다. ISO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통계품질관리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품질수준에 대한 목표를 세운 후, 통계품질을 진단하고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품질 좋은 통계였으나 최근에는 통계 품질이란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제공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의 품질진단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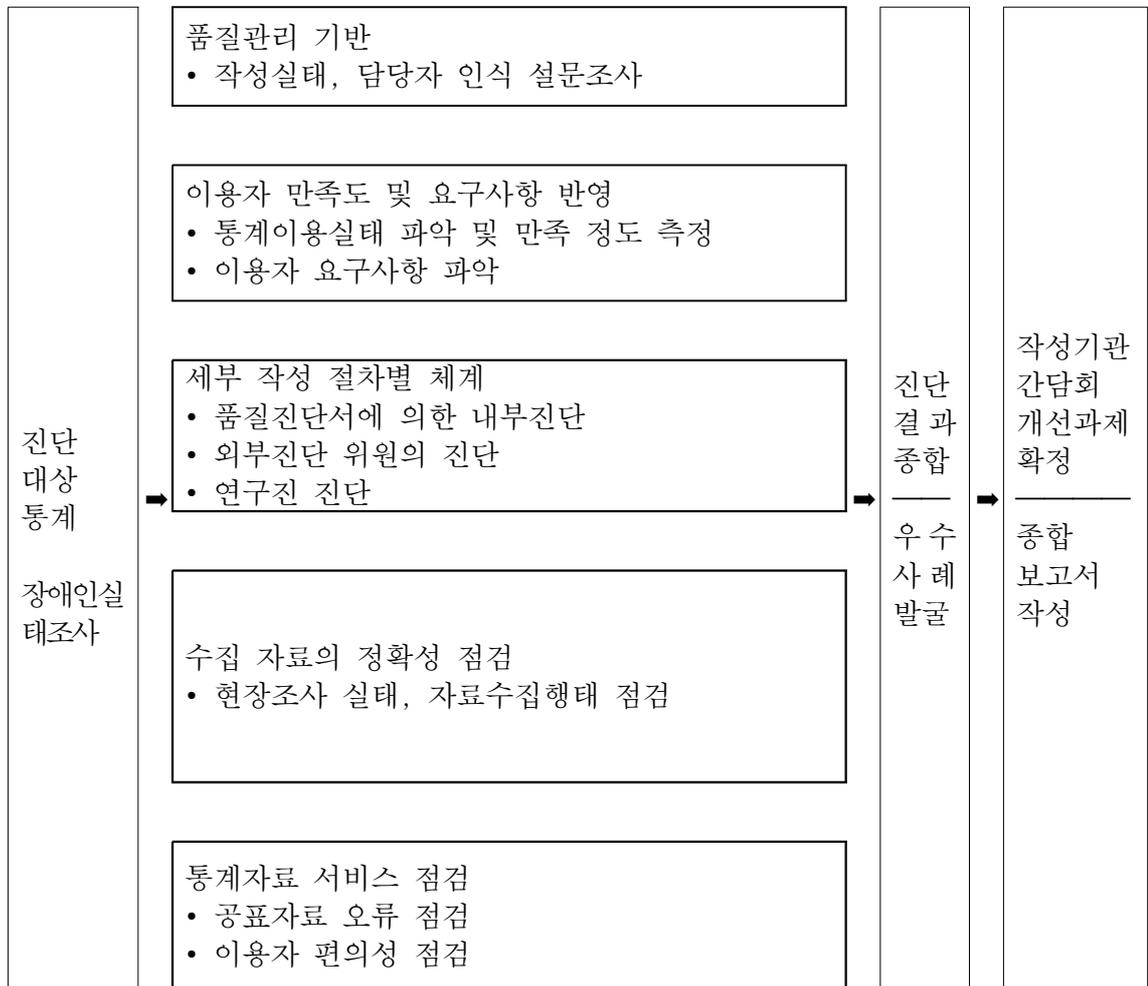
통계품질진단은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진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등 통계품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종전까지의 조사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등록장애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 시행 이전부터 통계작성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장애인 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조사 대상의 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실태조사는 원자료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질문 항목에 비해 조사 항목의 정형적인 구태의연함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들의 가부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차항에서 제시하는 내용별 품질진단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2. 내용별 품질진단 방법

통계품질진단은 품질관리 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작성 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점검, 통계자료 서비스 충실성 점검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통계품질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의 6가지 품질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품질진단 업무 흐름도(Flow Chart)

통계품질진단에 대한 5개 부문별 진단방법과 배경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진단부문별 진단방법 및 배경

	진단방법	진단배경
1. 품질관리기반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 여건 및 통계담당자 인식을 진단	- 고품질 통계생산을 위한 품질관리기반 파악
2.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등 실시	-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직접 평가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지표를 품질진단서라는 질문형식의 체크리스트로 설계하여 내부, 외부 및 연구진진단 실시	- '생산과정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과정중심(Process-Oriented)의 품질정의에 근거
4. 수집자료의 정확성	- 현장조사원 또는 응답자/보고자를 대상으로 응답/보고내용과 응답/보고 환경 점검	- 자료수집(현장조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실태 파악
5. 통계자료 서비스	- 보고서, 보도자료, DB 등 공표자료에 수록한 내용의 수치오류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 이용자 적합성에 근거하여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및 편의성 파악

출처: 통계청(2010), 정기통계품질진단 핸드북

첫째, 품질기반 진단은 세부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통계담당자에게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작성을 의뢰한 후 면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다시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환경을 진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통계의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파악한다.

둘째,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은 통계생산자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 자료로부터 파악되는 통계이용자의 만족도는 이용자적합성에 바탕을 두고 이용자가 직접 진단한 평가점수이다. 이 부분의 진단에서는 통계이용자들이 통계를 활용하는 실태와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통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ing, FGI)과 해당 통계의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은 통계작성과정이 통계작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부 작성절차별 진단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진단작업은 진단서를 통계작성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내부진단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진단하는 외부진단을 실시한다. 외부진단 시 진단위원은 대상통계의 작성절차에 대해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은 통계자료가 수집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으로, 이 진단의 절차는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과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에 대해 진단한다. 재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재조사 불가 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은 작성된 통계가 오류 없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은 만족스럽게 그 통계를 이용할 것이므로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오류의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가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5개 부분별 진단이 모두 완료되면 부문별 진단결과 및 수집 자료를 품질차원별로 분석하여 종합하며, 차원별 요약품질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차원(dimension)을 다음의 6가지

로 정하고 통계품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품질진단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6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작성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정확성(accuracy)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함으로써 작성되는데 정확성은 이러한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이다.

다.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라. 비교성(comparability)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의 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근거로 집계되어 서로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요소이다.

마. 일관성(coherence)

서로 다른 출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지만 동일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바.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활용가능한 통계표와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통계품질진단 사업은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의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통계품질진단 부문별 진단결과에서 관련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정확성 6가지 차원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통계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단점을 비교하여 통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3. 품질진단 진단 절차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단, 이들 순서는 관계기관 담당자와의 면밀한 협의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에 다음의 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전달한 후 연구팀이 현장방문 이전에 작성하여 연구팀에 전달하게 한다. 특히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통계이므로 조사통계용 작성절차 품질진단서 양식을 사용한다.

- (1)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 (2) 작성절차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

나. 통계품질심의위원으로 위촉된 2인의 외부진단위원에게 위의 (1), (2)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절차 품질진단서의 각 항목에 대한 의견과 품질 개선 의견서를 받는다.

다.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를 현장 방문하여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현장 방문 시 보건복지부의 과장과 통계작성담당자를 면담하여 기관장과 책임자의 통계에 대한 인식과 협조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 (2)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작성절차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를 수령한 후 통계작성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내용을 확인한다.
- (3) 통계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계담당자로부터 해당통계의 이용자 리스트를 수령한다.

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용자 리스트에서 약 60여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는 조사·분석팀에서 주관하고 통계진흥원에서 수행하였다.

마.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을 위해 장애인실태조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방법을 논의하며, 조사 연구를 담당할 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효율적인 자료 보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바.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 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과의 통계 품질 향상 로드맵에 관한 조언과 주제분야 통계분석 내용을 협의한다.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결과 요약

1. 기본현황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다. 작성 주기와 공표 주기는 3년으로 조사대상은 2008년 3월말 기준 7천 명의 등록장애인이다. 조사 방법은 장애인 개별조사는 면접조사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은 우편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공표시기는 익년도 2월(2008년도 조사의 경우 2009년도 4월에 공표)이다. 통계작성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가 조사를 기획하고, 실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이 통계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 관련 전문가 6명과 전문이용자 6명으로 구성된 FGI(표적집단면접)와 본 통계의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통계의 활용, 통계의 생산과정(조사방법의 적절성, 작성주기의 적정성, 항목의 타당성 등), 통계 활용의 편리성(자료의 편제 및 보고 형식의 활용도, 해외유사통계와의 비교, 매체의 적절성), 통계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정확성, 필요/불필요 정보, 정확도, 신뢰도),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의견, 향후 발전방향과 같은 5가지 대주제와

관련된 소주제 등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FGI의 결과를 요약하면, 장애인실태조사는 이상적으로는 매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2008년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첫 번째 조사인 만큼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 조사표는 장애인이 응답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사항목의 개편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의 기획 단계부터 보고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당사자들과 학계의 일부 연구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조사 공표시기에 있어 장애인실태조사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어 공표가 차기년도 4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부터 공표까지의 기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쯤에는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조사되고 보고서가 공표되어야 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과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원자료를 유료로 공개한다는 사실에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이에 종전의 원자료 유료화 지침에서 무료 공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간물이 일선 장애인복지관 등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었으며, 인쇄물과 더불어 CD로 보급하면 본 조사의 활용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함에 있어 본 조사는 주로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조사가 되어야 함에 모두 같은 의견을 보였다. 즉 장애성인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아동기와 노년기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나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장애인조사를 충분히 참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사시에는 종전까지 직접 종이조사표에 의한 기입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타 장애인조사의 경우에서 활용되고 있듯이 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방식을 함으로써 예산 및 시간의 절약과 더불어 조사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부작성 절차별로 진단한 결과, 통계작성 기획에 있어 이용자의 요

구 및 이용실태에 대해 작성기관 측에서의 적극적인 수렴 의지가 요구된다. 거시적으로는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의료모델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므로, 장애인 문제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ICF 등)의 최신 동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조사나 장애인을 둘러싼 시책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원에 대한 외부교육자의 경우 의료직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조사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닌, 의료적 판단에 경도될 위험이 있어 다양한 전문직에 의한 강사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여부에서는 비록 장애인복지법상 조사항목이 일정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목에 대한 관련 통계의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태적인 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 및 분석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패널 등과 같은 관련자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이용시도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이용자 명부를 제공받아 통계진흥원의 진행으로 수행되었다. 이 때 연구자가 추가적인 이용자 명부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4월~5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통계 이용실태 4개 문항, 통계 이용자 만족도 11개 문항, 문제점 및 개선의견 2개 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 재이용의사 1문항, 응답자특성 4개 문항 등 총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결과,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로는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인 DB자료의 이용 빈도가 29.7%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9년 4월에 공표된 통계가 2010년 6월 현재까지 국가통계포털과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에 등재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통계자료 공표시기 적절성에서는 대부분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FGI조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통계자료의 국가 간 비교 편리성을 보면, 국가 간 비교의 필요성 자체가 낮으며, 비교의 편리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통계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진단을 살펴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통계작성 담당자가 직접 작성절차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를 작성하는 내부 진단, 둘째, 본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 외부전문가를 진단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진단 결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진단하는 외부진단, 마지막으로 상기 내부진단 및 외부진단에 대한 연구진의 종합진단이다. 먼저 내부진단결과 총 평점은 4.32점으로 본 통계의 작성절차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진단되었다. 자료수집 영역이 5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사후관리가 3.33점으로 가장 낮게 진단되었다. 한편 품질차원별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5개 문항에 대해 관련성, 접근성/명확성, 정확성, 비교성, 일관성, 시의성/정시성의 6개 품질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8개 문항에 대해선 '해당 없음', 그리고 총 평점은 4.30으로 본 통계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내부진단 되었다. 품질차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성, 시의성/정시성, 일관성(5.00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접근성/명확성(4.75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정확성(4.22점), 관련성(4.00점)의 순대로 진단하였다.

내부진단에 대한 외부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진단은 외부 품질심의위원으로 선정된 2인에게 통계품질진단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품질진단 방법의 교육을 진행한 후 각각 진단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외부품질진단은 각각 전문가 2인을 위촉하였으며, 진단 평점은 익명으로 1, 2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하 작성절차별로 내부 및 외부진단과의 점수 차이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진단의 경우 품질차원을 묻는 45개(이 중 7-3 및 7-4의 품질차원은 묻지 않음) 문항 중 36개 문항에 응답하여 9개 문항은 '관계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들에 대해 외부진단 1의 경우는 모두 '아니다'의 2점으로, 외부진단 2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5-1(자료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는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5-4(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 6-4(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6-11(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

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로, 이들 항목들은 '관계 없음'이 아닌 외부진단의 평가대로 '(전혀) 아니다'로 평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내부진단에서 이들 4개 문항이 '전혀 아니다'로 평가할 경우 4.41점에서 4.07점으로 낮아지며, 이는 외부진단 1과 근접하게 된다. 외부위원 A와 B는 점수 차이가 1.17점으로 외부위원 1의 경우는 '보통'으로 외부위원 2의 경우는 '아니다'로 평가하여, 외부진단 모두 내부진단의 점수대에 비해 점수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에 있어서는 이번 2008년 실태조사에서는 시설장애인에 게도 직접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이전 조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의 의의와 실제로 몇 명에게 협조를 받았으며, 나아가 가능하다면 재가와 시설장애인 심층조사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실제 조사가 타 국가조사보다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사원의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내용의 충실, 근로 조건의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사원의 수당을 알아본 문의한 결과 통계작성기관 내부 단가기준에 의거하여 1인 기준 1일 43,750 원(2008년 단가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조사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차기 조사 때에는 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사원 교육은 내부 및 외부강사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 외부강사가 전원 의료직이라는 사실은 실제 장애인에 대한 조사시에 의료적 판단 외의 사회복지적 판단의 발휘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케 한다. 교육의 숙지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에 role-play, 질의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품질차원별로 외부진단한 결과를 요약하면, 품질차원별로 점수를 계산하였을 때 내부진단에 비해 외부진단의 평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진단의 평균은 3.44점으로 보통의 평가가 내려졌다. 가장 높은 것은 정확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비교성 및 시의성/정시성이었다. 특히 이

비교성 및 시의성/정시성의 내부진단은 모두 5.00임에 비해, 외부진단은 평균 2.50점의 최하의 평가가 내려졌다. 이 두 품질차원에서 내부와 외부위원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가 내려진 이유는 비교성을 묻는 5-2, 5-4과 시의성/정시성을 묻는 6-8 질문항목에 대해 내부에서는 '관계없음'으로 평가한 반면, 외부진단에서는 '(전혀)아니다'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성/정시성을 묻는 6-7질문 항목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에 대해 내부진단에서는 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외부진단에서는 공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해를 넘겨 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가에 있어서는 외부 1에서 '그렇다'와 외부 2에서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외부위원 간에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6-7항목에서는 조사시점을 앞당겨 조사 연내에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 시급하게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내부진단과 외부진단을 종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내부 진단의 경우와 외부 진단의 경우가 비교적 유의미한 점수 차를 보였으며, 내부진단보다 외부진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진단의 차이, 외부진단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내부진단에서 '관계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외부진단측에서는 공히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그 결과 점수가 크게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진단 사이의 측정 차이는 작성기관의 근거자료에 대한 외부진단위원간의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는 각 위원간의 경험과 직관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 및 외부진단에 대한 연구진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에 대해 작성기관 측에서의 적극적인 수렴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제시가 있을 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인다(1-2).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의료모델적 관점에서 보

고 있으므로, 장애인 문제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ICF 등)의 최신 동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대한 시도는 전무하다(1-4).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형식적인 절차는 잘 따르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 장애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조사나 장애인을 둘러싼 시책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 항목은 결여되어 있었다(1-5).

통계설계에 있어서는 표본규모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내부 및 외부1의 경우 매우 그렇다로, 외부 2의 경우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의 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작성기관 입장에서는 당초 등록장애인을 전제로 한 조사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외부 2의 경우는 그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데서 오는 인식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실태조사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2-5).

조사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 작성기관 내부 교육자와 외부 교육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교육자의 경우 의료적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조사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닌, 의료적 판단에 경도될 위험이 있다(3-2). 통계작성자에 의하면 조사원의 조사 교육에 숙지도는 마지막 시간에 role-play, 질의 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나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3-5).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없어 입력자료에 대한 오류탐지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4-1). 무응답 실태에 대한 분석은 사례수 제시와 전화추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석까지 아울러 수행할 필요가 있다(4-3).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여부에 있어 관계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비록 장애인복지법상 조사항목이 일정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목에 대한 관련 통계의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5-1). 경제 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관계없음이라고 하였으나 전혀 아니다로 판단함이 적절하며, 향후 동태적인 사회현상

이나 통계작성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5-4).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 여부는 내부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 검증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5-7).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는 관계없음으로 하였으나, 전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심층조사의 대상으로 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의 의의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6-4). 원자료는 수집 후 입력이 거의 완료되면 바로 공개해야한다는 외부진단 1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상 공개 원칙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6-6). 결과 자료의 공표 시점에 있어서는 조사의 착수가 9월부터 이루어지므로 장애인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는 사사분기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태 조사와 공표시기는 이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7).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의 사전 예고 여부는 공표일정 자체가 없으므로 관계 없음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고 평가함이 적절할 것이다(6-8).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주로 보고서 형태로 접하는 경우가 많고, 파일의 경우 음성파일 등으로도 제공할 것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무엇보다 원자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6-9).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 및 분석 여부는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장애인고용패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자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이용시도가 요망된다(6-11). 내부진단에서는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외부진단2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성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7-4).

연구진에 의한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평균 3.15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 이하의 차원을 낮은 순대로 나타내면 시의성/정시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일관성이었으며, 평균 이상의 차원을 높은 순대로 나타내면 관련성, 정확성의 순이었다. 6가지 품질차원에 대한 평가의 순위는 외부진단과 동일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에서 연구진은 관

련성을, 외부진단에서는 정확성을 나타내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수집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은 장애인실태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방문” 조사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자료수집시 현장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었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의 의의와 실제로 몇 명에게 협조를 받았으며, 나아가 가능하다면 재가와 시설장애인 심층조사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원의 역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불허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조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원 선발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선발기준은 조사 경험이 있는 자로서 특히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 경험자 내지는 장애인 대상의 조사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발하고 있었다. 조사원 교육은 4일 동안 매일 9시 ~ 6시까지 8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주로 조사개요, 표본,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공통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 실습으로 구성되어, 장애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항목들을 대체로 망라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자료는 교육지침서로 매뉴얼화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사원 교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강사진과 교육의 숙지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강사진의 구성이 필수적이며, 교육의 숙지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가구에서 불응하거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현장대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대상가구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다시 한 번 조사 협조 요청을 하여 조사에 응할 경우는 조사를 실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여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조사대상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설장애인 조사에 있어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까지는 우편조사로 실시하였으나,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시설 장애인도 직접 방문면접조사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전 조사와

달리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시설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는 바,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에 협조요청 공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조사응답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872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81.6%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은 통계자료 서비스 점검을 위해서 본 통계의 발간물 내용을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는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와 조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를 사용하여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수록 항목수가 20개, 수록률이 57.1%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보고서 이용시의 편의사항이 보통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진단결과 종합

1. 기본현황

(가) 기본현황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별 장애인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다.

작성 주기와 공표 주기는 3년으로 조사대상은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으로 208개 표본 읍면동에서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7,000명의 등록장애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장애인 개별조사는 면접조사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은 우편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조사원은 임시 및 일용 조사원을 활용하고 있다. 공표시기는 2009년도 4월이며, 통계 간행물의 명칭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이다. 통계작성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가 조사를 기획하고, 실제 현장 조사와 자료처리, 결과분석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과 공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통계작성 여건

① 인적자원 여건

본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담당 인력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담당자별 현 보직 근무연수는 1년 이상으로, 통계업무 경력은 모두 1년 이상이었으며, 최근 3년간 통계교육 이수 실적도 3회 3일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물적 자원 여건

㉠ 통계작성관련 예산규모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800,000천원이었으며, 자체실시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는 345,866천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연구진들에 의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2007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선정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8년 조사에서는 가구표본조사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전회 조사에 비해 예산이 감소하였다.

㉡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 현황

장애인실태조사의 기획과 실시를 위해 구비하고 있는 전산시설은 하드웨어로서 IBM server, 소프트웨어로서 SPSS(자료분석)를 갖추고 있다.

(다)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5점 척도를 이용한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질문

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매우 그렇다)인 대답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통계 담당자의 인식에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그 중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산('아니다')이었으며,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예산의 확충과 그를 통한 장비 보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 통계작성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① 통계작성시 애로사항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에서는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종전처럼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조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등록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언급은 장애인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소산이며, 관련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망 사항이 지적되었다. 첫째, 조사 시행전 통계승인 절차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가 필요한 것과, 둘째, 통계청을 통해 조사에 대한 공지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매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통계청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위와 같은 지적은 실제 업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 시점, 분석 기간, 공표시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가 어떠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의견을 청취한 후 통계청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통계청에 대한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본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조사 시행 전년도에 공지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본다.

② 통계 품질관리기반 확보를 위해 개선할 사항

통계 품질관리기반 확보를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먼저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 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 18조에 근거하여 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조사 사업이며,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후 종적인 검토를 위해 유사한 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조사에 대한 통계품질관리를 하는데 있어 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의 구성 및 압축,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품질관리보고서 작성을 함에 있어 작성에 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며, (3~5년) 주기 조사의 경우, 작성기준년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다만 주기 중 1회 작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작성기관의 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실태조사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비롯하여,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각론적 토픽과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통계 산출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작성 주기 또한 5년에서 현행 3년으로 단축된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조사 항목을 3년 주기로 수행하기보다는 항목에 따라서는 1년 주기로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타 조사 결과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조사 항목을 대폭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2.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가. 진단 내용 및 방법

이 통계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두 가지 진단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 통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이용자로 구성된 FGI를 실시하였다.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이용자는 통계

작성 기관의 추천리스트와 진단팀이 독자적으로 해당분야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연구자들을 파악하여 확보한 리스트를 참고로 하였다. 둘째 본 통계의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이용자 리스트는 연구자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과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현장 근무자와 접촉하여 구성하였다.

나. 진단결과

(1) 표적집단면접(FGI)

(가) 표적집단면접 방법 및 내용

일반통계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기 전에, 전문가 통계이용자들의 의견 및 기대수준, 요구사항을 보다 탐색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조사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장애인실태조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표적집단면접은 본 통계를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정책고객,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및 주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논의를 통해 본 통계의 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불만사항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적집단면접은 소수(6-10명)의 표적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질의응답이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상호작용적 대화와 집중적인 토론을 함으로써 주어진 사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과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문가 교수 4인과 연구원 2인의

총 6인이, 이용자 그룹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3명, 자립생활센터 2명, 장애인복지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의 총 6인이 참석하여 진단팀의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원의 진행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즉, 통계의 활용, 통계의 생산과정(조사방법의 적절성, 작성주기의 적절성, 항목의 타당성 등), 통계 활용의 편리성(자료의 편제 및 보고 형식의 활용도, 해외유사통계와의 비교, 매체의 적절성), 통계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정확성, 필요/불필요 정보, 정확도, 신뢰도),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의견, 향후 발전방향과 같은 5가지 대주제와 관련된 소주제 등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표2> 장애인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FGI) 개최 내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2010.5.28(금) (1차)	경기대학교 서대문 캠퍼스 복합빌딩 202호실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 한국 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
2010.5.29(토) (2차)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교수연구동 세미나실	-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나)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표적집단면접(FGI)을 진행하기 전에 면접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였으며, 이 경우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통계 생산 과정, 활용의 편리성, 내용의 충실성, 문제점 및 개선의견/향후 발전방향의 4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다시 통계 작성, 이용, 피드백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있어 지적된 주요 토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① 통계 작성

첫째,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에 있어 2008년 조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첫 번째 조사이므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수가 빠르게 급증(약 43만 8천명, 25.8%증가)하는 가운데 3년 주기를 유지할 경우 장애인복지정책수립 및 시행에 즉각적인 반영이 곤란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3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년 주기로는 장애인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2년 주기로는 욕구조사 정도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복지 패널의 예에서처럼 장애인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주기를 줄이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적어도 자료 수집부터 공표시기까지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재와 같이 공표시기에 있어서는 조사 후 다음해 4월에 공표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는 공표시기로 조사년도의 익년 2월을 규정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표시기는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당해년도 10월 또는 11월로 삼음이 적절하며 그에 따른 조사 착수의 조기 시행이 제언되었다.

둘째, 조사대상 및 표본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이전 조사와 달리 200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게 할 경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거나 장애가 있지만 등급을 받지 않은 장애인은 조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이들의 실태와 욕구 파악은 어렵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시책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장애출현율의 추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표본 추출에 있어서는 유형별 등급에서 비례추출을 적용하면 저소득과 또는 수급과 비수급에 대한 비율이 공평하게 분할이 될 것인가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미응답자들에 대한 결측치도 있을 터, 소수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으

로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를 이용하는 미등록장애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비례추출을 할 때 유형 등급만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비례추출을 하면 그 장애인들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파악이 용이할 것이다.

셋째, 이전 조사와 차별화된 항목의 부각 필요성이다. 즉 조사시점을 제시할 때 면접조사에 대한 기간은 제시되어 있으나, 우편조사를 실시한 기간에 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차후 통계작성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2008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시설장애인에게도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조사는 시설 현황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을 조사하기 위한 것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되, 전회의 조사와 다른 점 등은 무엇이며, 어떤 의도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세부 장애의 특성과 최신 경향을 반영한 조사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통계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정책 또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설문지의 성격이 다분히 있음이 지적되었다. 환언하면 이번 조사도 정부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수치를 얻기 위한 목적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그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할 때 현재의 질문은 너무 일반적인 사항들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장애유형이나 등급같은 부분들이 조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항목들은 기존 조사와 중복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세부 장애의 특성 파악이 미흡한 지적 등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면장애 등 소수 유형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0명 미만의 인원들이 추출이 돼서 응답을 하여 그들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는데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느끼는 이동의 불편함과 청각장애인이 이동의 불편함은 근본

적으로 다르다. 장애가 경증 중증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양하여 해석의 논란 소지도 있다. 부록의 설문 문항 중 질문 의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존재함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527쪽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족, 이웃, 활동보조인 등 다양한 사적 및 공적 지지체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응답을 해도 되는지 가중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럴 경우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생활환경, 직업활동, 생애주기 등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진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먼저 DB자체가 등록장애인 DB를 가지고 추출한 것이라면 등록장애인 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를 풀어낼 때 필요한 내용들 좀 더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등록장애인 DB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등급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장애인 등록 시점부터 다양한 조사 항목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전문적 지식의 여부에 따라 입력의 오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본 추출에 있어서 15개 장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사가 필요한데, 소수유형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례추출보다는 최적분할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유형의 인원수 대비 10%가 아닌 20~30% 이상으로 추출을 하여 표본수를 늘려 의견을 청취해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설문구성, 표본추출, 정확한 코딩, 코딩자료공개 등이 필요하며, 보고서 작성을 장애유형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활용하기가 수월할 것임이 제시되었다. 조사 항목에서 의료적 측면 내지 직업적 측면 등에서의 특정 관점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문항을 조정할 것도 제시되었다. 일례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조사항목의 반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동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제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조사 문항이 필요하다. 이들 문항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가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이 살아온 환경, 지역별 특성(농어촌, 도시지역 등)에 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흐름, 문화적 배경,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가 많은 장애인들은 비참여 장애인과 욕구가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차별화하여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매년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들은 대폭 정리하고, 조사 당시 중요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 필요한데, 2007년도부터 서비스 제공분야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사업관련 문항을 심층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개선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각 장애유형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청취를 할 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임이 제안되었다.

②통계 이용

첫째, 통계 이용 측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결과물 접근성의 확대였는데, 이에선 발간물 및 원자료를 들 수 있다. 먼저 보고서의 양이 방대하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의 이용도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복지패널의 경우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자료마저 입수가 가능한데,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복지부나 보사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에서는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이 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속 독점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고서 결과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자료를 풀어서 글로 표현해 놓을 때, 데이터와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응답 분석 자체가 무리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기타에 응답한 비율에 40%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예로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에 29~38세에는 어려움 없음이 46.2%였는데,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한 명시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장애인들의 반 가까이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복지의 진전에 오히려 해악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련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볼 수 있도록 엑셀자료를 배포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발간물과 웹사이트 공개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 때 원자료도 공개해야 할 것임이 제시되었다. 발간물의 경우 각 복지기관에 무상배포가 필요한데, 이 때 두꺼운 발간물보다 CD로 배포함이 적절할 것이라 제시되었다.

둘째, 통계작성기관의 조사 업무의 분화 및 타 통계조사 활용의 필요성으로, 통계작성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사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조사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주관을 하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수치조사를 해서 그것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의 장애인실태 관련 통계 사례를 적극 참조할 것이 요망되었다. 그 예로 OECD에서 장애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질병, 장애, 노동(Sickness, Disability and work)”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개념으로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첫째,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둘째, 자기보고식으로 보고한 장애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일정 기준(조사항목)을 마련하여 등록장애인은 물론 비등록장애인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른 예로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NHIS)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면접조사는 국민의 일반 질병에 관한 것을 질문하지만 장애 자체만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이 조사의 장점은 장애인만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 나타나는 사실이 장애인만의 특성인지 비장애인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알 수 없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가 매우 수월하며,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제시에 유용하다는데 있다.

③통계 피드백

이 단계에서는 이미 생산된 통계 결과물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적극적 피드백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가 통계 결과물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분석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바, 설문 구성시 사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며, 모호한 부분은 각주를 적극 활용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가)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이용자 명부를 제공받아 통계진흥원의 진행으로 수행되었다. 이 때 연구자가 추가적인 이용자 명부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4월~5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와 이용자 리스트 제공된 이메일과 전화로 웹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통계 이용실태 4개 문항, 통계 이용자 만족도 11개 문항, 문제점 및 개선의견 2개 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 재이용의사 1문항, 응답자특성 4개 문항 등 총 23개의 문항이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용자로부터의 통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용하고 통계 생산자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사용되는 항목은 <표3>과 같다.

<표3>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

분류	항목 구성
통계 이용 실태 (4개 항목)	1. 통계자료 이용빈도 2. 통계자료 이용목적(용도) 3.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 4. 통계자료 이용경로
통계 이용자 만족도 (11개 항목)	5-1. 통계자료 공표시기 적절성 5-2. 통계자료 예고 공표 일정 준수 5-3. 통계자료 제공방법 편리성(DB구현, 자료다운로드 등) 5-4.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제공 5-5.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충분성 5-6.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다양성 5-7. 통계자료의 신뢰성 5-8.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의 편리성 5-9. 통계자료의 비용대비 품질 5-10. 통계자료의 시계열 비교의 편리성 5-11. 통계자료의 국가간 비교 편리성 5-12. 통계자료의 전반적 만족도
재이용 의사	6. 향후 재이용 의사
문제점/개선 의견	7. 품질 변화양상 8. 통계자료의 가공 사용 여부 9. 개선 의견(개방형)
* 응답자 특성	성, 연령, 직업, 통계활용비중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64명의 응답자들을 조사하여 나타낸 비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64.1%, 여자가 35.9%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로는 40대가 50.0%로 가장 많으며, 50대 25.0%, 30대 21.9%, 20대 3.1%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직업별 분포로

는 공공기관이 46.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학계 32.8%, 기타 민간기업 및 단체는 7.8%로 조사되었고, 통계자료 활용비중은 높은 편이다가 50.0%를 차지했고, 매우 높다는 18.8%, 보통이 25.0%로 연구활동과 업무 등에서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통계이용실태

① 통계자료 이용빈도

이 통계를 이용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반기 1회에서 월 1회까지가 71.9%였고, 연 1회 이하가 15.6%, 주 1회 이상도 12.5%로 나타났다.

② 통계자료 이용목적(용도)

이 통계자료의 이용목적에 대한 응답은 연구·학술·학습활동이 45.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왔다. 그 외 정책 수립 및 평가가 35.9%, 사업 및 경영 계획 수립에서 12.5%, 업무 외 개인적 관심 3.1%, 표본 조사의 모집단 1.6%의 순이었다.

<표4> 통계자료 이용목적(용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정책수립 및 평가	23	35.9
연구·학술·학습활동	29	45.3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	8	12.5
표본조사의 모집단	1	1.6
업무 외 개인적 관심	2	3.1
기타	1	1.6
합계	64	100.0

③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

장애인실태조사의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로는 간행물/보고서가 5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DB자료가 29.7%, 그 외 보도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는 각각 9.4%, 3.1%를 차지했다.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인 DB자료의 이용 빈도가 29.7%에 그치고 있는 점은 KOSIS(국가통계포털)과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에 통계DB정보가 미제공 상태(2010년 6월 현재)가 원인으로 보이며, 2009년 4월에 공표된 통계가 2010년 6월 현재까지 국가통계포털과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에 등재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표5> 통계자료 이용자료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간행물, 보고서	36	56.3
DB 자료	19	29.7
마이크로데이터	2	3.1
보도자료	6	9.4
요청하여 재 집계한 자료	1	1.6
합계	64	100.0

④ 통계자료 이용경로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이용경로로는 작성기관 홈페이지가 54.7%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이어 통계 작성부서에 직접 요청이 17.2%, 서점 등에서 통계 간행물 책자 구입이 12.5%, 신문(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 보도자료가 6.3%, 공공도서관/자료실 등에서 열람은 3.1%를 보였다.

⑤ 통계자료 공표시기 적절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공표시기 적절성은 보통과 그렇다, 대체로 그

렇다가 대부분으로 전혀 및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일부를 차지하여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⑥ 통계자료 예고 공표 일정 준수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예고 공표 일정 준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대부분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일부를 차지하여 대체로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⑦ 통계자료의 시계열 비교 편리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시계열 비교 편리성에서는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 해당 없음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였다. 2008년도 조사는 7차로 3년 주기로 바뀐 이래 시계열 비교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6> 통계자료의 시계열 비교 편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3.1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9.4
보통이다	9	14.1
대체로 그렇다	19	29.7
매우 그렇다	9	14.1
해당 없음	10	15.6
모름/거절/무응답	9	14.1
합계	64	100.0

⑧ 통계자료 국가 간 비교 편리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국가 간 비교 편리성에서는 보통과 대체로 그

렇다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 전혀 그렇지 않다도 유의미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해당 없음과 모름/거절/무응답도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등 통계자료 국가 간 비교의 필요성 자체가 낮으며, 비교의 편리성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⑨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제공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제공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대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⑩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충분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 제공정보의 충분성에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 않아, 제공정보는 대체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⑪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다양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제공정보 다양성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제공정보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⑫ 통계자료의 신뢰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신뢰성으로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 통계자료는 대체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7> 통계자료성의 제공정보 신뢰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6.3
보통이다	13	20.3
대체로 그렇다	31	48.4
매우 그렇다	16	25.0
합계	64	100.0

⑬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편리성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편리성에는 해당 없음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자체의 필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으면서, 이용의 편리성은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⑭ 통계자료의 비용대비 품질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비용대비 품질에서는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해당 없음,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간행물을 받아보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게 나타나 있고, 실제로 간행물을 받아 보는 경우에도 비용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8> 통계자료의 비용대비 품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1.6
보통이다	21	32.8
대체로 그렇다	18	28.1
매우 그렇다	7	10.9
해당 없음	16	25.0
모름/거절/무응답	1	1.6
합계	64	100.0

⑮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에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의 응답이 유의미한 수치를 보인 사실로부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9>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3.1
보통이다	20	31.3
대체로 그렇다	34	53.1
매우 그렇다	8	12.5
합계	64	100.0

⑯ 향후 재이용 의사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향후 재이용 의사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다가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낸 사실로부터 재이용 의사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⑰ 품질 변화양상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자료의 품질 변화양상에는 향상되었다, 매우 향상되었다에 높은 비율을 보인 점에서 품질 변화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0> 품질 변화양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약간 저하되었다	1	1.6
변화가 없다	12	18.8
향상 되었다	44	68.8
매우 향상되었다	7	10.9
합계	64	100.0

3) 통계 이용자 만족도

통계의 이용자 만족도는 항목 만족도(Si)와 항목 중요도(Wi)에 의거한 종합만족도로 측정한다. 항목 만족도는 11개의 계열 항목의 응답 내용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개별만족도 점수는 전반적 만족도가 3.75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별 항목 만족도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3.92점으로 가장 높고, 국가 간 비교의 편리성이 3.0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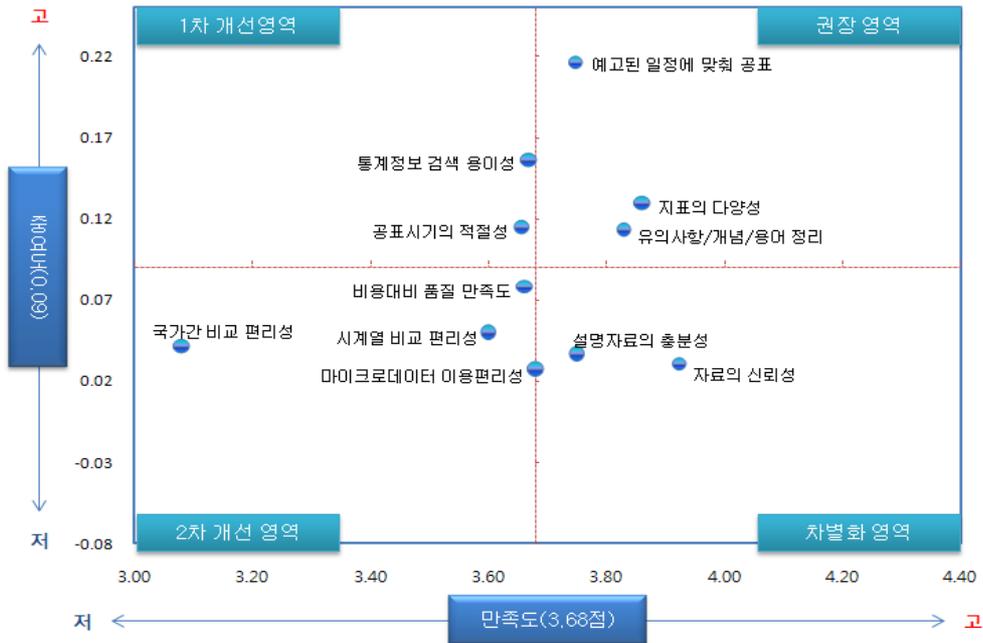
종합만족도는 개별 항목의 만족도가 전반적(체감) 만족도에 미치는 항목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계산하여 3.71점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체감만족도가 종합만족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수준은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표11> 종합만족도 산출결과

(단위: 점)

만족도 항목	회귀계수 (ri)	항목만족도 (Si)	항목중요도 (Wi)
1) 적절 시기 공표	0.127	3.66	0.12
2) 예고된 일정에 맞춰 공표	0.240	3.75	0.22
3) 통계정보 검색 용이성	0.173	3.67	0.16
4) 유의사항, 개념, 용어 정의	0.126	3.83	0.11
5) 설명자료의 충분성	0.041	3.75	0.04
6) 지표의 다양성	0.144	3.86	0.13
7) 자료의 신뢰성	0.035	3.92	0.03
8)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 편리성	0.031	3.68	0.03
9) 비용대비 품질 만족도	0.087	3.66	0.08
10) 시계열 비교 편리성	0.056	3.60	0.05
11) 국가간 비교 편리성	0.046	3.08	0.04
종합만족도			3.71
모형 적합도	R ² =0.709, F=11.525, p=0.000		

이를 바탕으로 속성별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를 만족도 평균과 중요도 평균을 중심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2> 이용자 만족도 - 개선영역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1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통계정보 검색 용이성, 공표시기의 적절성이 먼저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만족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은 2차 개선영역으로는 국가 간 비교 편리성, 시계열 비교 편리성, 비용대비 품질 만족도가 해당되었다.

3.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진단

가. 진단내용 및 방법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통계작성 담당자가 직접 작성절차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를 작성하는 내부

진단을 실시한다. 둘째, 본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 외부전문가를 진단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진단 결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진단하는 외부진단을 실시한다. 외부진단위원은 해당통계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총 2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외부진단위원은 통계의 작성절차에 대해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작성절차 품질개선의견서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부진단 및 외부진단에 대한 연구진의 종합진단이다.

(1) 통계품질지표

통계품질지표는 품질수준을 측정할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절차마다 통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굴·선정하여 구성한다.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품질진단서는 통계작성절차마다 통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굴·선정하여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절차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측정에 무리가 없는 지표, 향후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본 통계는 조사통계로서,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서는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을 작성절차별로 나누어 보면, 통계작성 기획이 5문항, 통계 설계가 7문항, 자료수집이 6문항, 자료입력 및 처리가 4문항,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가 8문항, 문서화 및 자료제공이 11문항, 사후관리가 4문항이다.

나. 진단결과

(1) 내부진단 결과

(가)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본 통계의 내부진단은 본 조사통계를 직접 총괄 담당하는 작성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를 제공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진단하였다.

내부진단결과 총 평점은 4.32점으로 본 통계의 작성절차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진단되었다. 자료수집 영역이 5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사후관리가 3.33점으로 가장 낮게 진단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 작성 절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5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점 4.6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계작성 목적에서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복지 관련 유사통계가 없는 가운데, 장애인등록업무의 목적 제시를 통해 통계작성의 목적이 함께 제시되고 있고, 장애인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 업무 내용 제시를 통해 주된 활용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렴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주된 이용자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조사표 개발 등의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정의, 장애유형 및 등급 등 분류체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의 및 분류 기준에 맞추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 현황(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와의 부합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통계작성의 개편작업 적절성에 있어서는 개

편작업을 위한 의견수렴, 자문회의, 내부회의 등을 통해 조사 년도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자문회의를 통해 개편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② 조사통계 설계

조사통계 설계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7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점 4.57점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계 작성 대상의 명확성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의 정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등록장애인 통계작성을 위해 장애인 대상 및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자료수집 단위(Unit), 자료수집 기준시점 또는 자료수집 대상기간의 설정 등이 명확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조사표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과 작성의 편리성에 있어서는 양식의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양식 각 항목별 기입요령 등은 이미 장애인 등록시 작성된 양식을 그대로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 보고 있었다. 또한 항목설명, 자료 정리, 오류사례 제시 등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때, 조사표 구성에 있어 굵은 글씨, 기호 등을 활용하여 조사표 구성에 있어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조사 항목 및 조사의 순서에 있어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을 나타냈다.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시의 사전검토 여부에 있어서는 본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조사항목, 조사시간 등의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본 통계 작성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의 표본오차 관련지표의 작성 여부는 표본설계시 주요변수에 대한 변동계수를 고려하나, 조사결과분석에서는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었다.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의 적정 표본규모 설계에 있어서는 장애인 모집단 리스

트를 분석하여 지역별, 장애특성별 적정규모의 표본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특정 장애(안면 등)의 경우 강제 배분하여 전체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층화 2단추출을 고려하여 각 층별 표본을 배분하고, 특정장애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표본이 조사되도록 하고 있었다.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 등급별로도 표본을 배분하여, 공표범위를 고려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본수준 유지를 위한 표본관리에 있어서는 표본설계시 모집단과 조사 완료후 모집단에 대한 변동을 파악하여 추정값에 대한 변동을 보완하는 사후 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패널조사가 아님으로 표본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본설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표본설계과정에 표본추출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의 표본설계 부분에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다.

③ 자료수집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6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모든 항목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점 5점으로 아주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사원을 위한 상세한 지침 제공 여부에 있어서는 첫째,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개요와 조사항목 해설 및 항목별 기입요령 등을 포함한 조사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조사원 교육과정 중에 조사원의 현장 수행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중 조사시 나타나는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중 직접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사원들이 조사항목에 대해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 실시 이전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4-5일간의 조사원 교육일정에 따라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role-play도 실시하여 전달이 잘되도록 하고 있었다. 조사표 내지는 조사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 중이라도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메일을 통해서도 변경사항을 전달하여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도 동영상, 관련 자료의 팸플릿,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여부에 있어서는 먼저 조사 실시 이전, 조사구 해당 지자체에 조사 및 조사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조사구내 조사를 공지하고 조사지역내에 조사안내공고문을 부착하여 조사실시를 공지하고 있었다. 현장조사 관리를 위해 조사 실시 이전 미리 조사팀별 조사 일정, 조사지역 등이 정해지며, 현장조사가 실시되면 매일 조사진행 점검을 하고, 조사팀의 조사진행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발생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사팀에게 전달하여 동일한 조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이는 전화통화, 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중복 전달하고 있었다.

조사기획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여부에 있어,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조사원교육 과정 중 응답자 1인당 평균면접시간, 조사표 1부당 평균 완성시간, 평균 내용검토시간 등 조사 직원 개인별 업무량 등을 고지하여 조사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었다.

조사기획자의 조사원에 대한 조사관련 전문지식의 숙지 여부에 있어, 조사기획자는 조사원의 업무지식 숙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이후 조사를 나가기 이전 role play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숙지정도를 높이도록 하고,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새로이 교체되는 직원 발생시 조사에 투입되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현장조사시의 질의사항의 적절한 처리와 정보의 공유면에 있어서는 질의사항 발생시 중앙의 연구팀으로 연락→ 해결방안 지시 → 지시된 내용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질의사항에 따라 지시된 해결방법은 모든 조사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원들에게 연락하여 공지하고 있었으며,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원들의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④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입력 및 처리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4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점 3.75점의 보통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자료입력 지침서는 두고 있으나 자료입력을 위한 자동화된 입력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생산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장애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에디팅작업의 체계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본 자료는 조사지역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각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에디팅하여 취합하고, 2차로 조사 마무리된 이후 중앙 연구실에 조사원들이 모두 모여 에디팅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연관관계 분석에 의한 논리적 오류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상치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무응답 실태에 대한 분석 여부는 분석표 작성시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무응답에 대한 적절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무응답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조사부터 집계, 분석 단계까지의 내용검토의 절차 구축에 있어서는, 첫째, 개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 전산파일에 대한 연구원내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관리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 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 전산파일을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자료처리 단계별 업무흐름도가 마련되어 있고, 코딩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어 검토할 사항, 방법 등 내용검토 지침, 오류 유형과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셋째, 발생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오류분석지침에 포함함으로써 점검작업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8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는데, 이 중 5개 항목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3개 항목은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관계없음으로 응답한 항목 중 공표된 잠정치, 확정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관리는 '전혀 아니다'로 판정함이 옳을 것으로 보며,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된다.

집계표의 통계표간 일관성 검토 여부에 있어서는 작성된 통계표의 일치성 여부 등의 일관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항목간 집계결과는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분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모수 추정시 추정절차의 적정성 여부는 모수 추정식, 추정과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가중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적합한지 통계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해 보고서에 작성·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이상치(outlier), 무응답 처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료집계단계에서 생성되는 중간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 여부는, 연구회기관과의 내부적인 검증관련 회의 등을 거쳐 수행하고, 검증과정의 분석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내부 검증단계에 관한 규정 및 검증 지침의 문서화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최종 통계자료의 현실변화 반영도도 내부적인 항목간 검증을 통해 실시하고 있었다.

⑥문서화 및 자료제공

문서화 및 자료제공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11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점 4.57점으로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통계작성과 관련한 각종 문서화,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의 이용자 공개 여부,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 준수 여부는 '관계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

은 관계 없음이라기보다 '전혀 아니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항목의 준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는, 간행물 발간 이전에 수치 및 표기 오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류 발생시 분석함과 더불어 관련 근거를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있었다.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의 수록을 통한 이용자 편의 도모는, 간행물에 조사개요,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 정보,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통계표 설명자료 등을 수록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의 조사결과 동시 이용 여부는, 공표를 한 이후에 자료를 중앙담당부처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있으며, 자료를 작성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 자료의 적절 시점 공표 여부에 있어서는 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외 실태조사보고서도 동시에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표의 개념보다는 결과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자료의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본 결과자료는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자료의 접근성은 높으나, 이용방법, 이용절차 등을 따로 공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본 통계자료는 데이터 파일 형태로 구축되어 있고 제공되고 있으며, 보도자료, 보고서,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로, 본 조사자료 제공시 제공자의 정보를 예측할 수 없도록 식별정도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⑦ 사후관리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4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항목이 주로 '그렇다'와 '보통'로 응답하여 평점 3.33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한 신속한 통계작성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통계작성과정 중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완료 이전까지 관련 부처,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도 실시하여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에 있어서는 조사담당 직원은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충분한 이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조사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인력풀이 있어 직원이 바뀌어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 전문협회 등과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예: 장애인고용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단체, 통계청 등)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에 있어서는 통계작성 과정 및 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자료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외부의 문의 및 자료요구시 적절히 대처함(근거자료 발송, 요구자료 분석 등 실시)을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의 여부는 '관계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전혀 아니다'가 적절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나)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통계작성 담당자에 의한 내부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개 문항을 관련성, 접근성/명확성, 정확성, 비교성, 일관성, 시의성/정시성의 6개 품질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8개 문항에 대해선 '해당 없음', 그리고

총 평점은 4.30으로 본 통계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내부진단 되었다.

품질차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성, 시의성/적시성, 일관성(5.00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접근성/명확성(4.75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정확성(4.22점), 관련성(4.00점)의 순대로 진단하였다.

(2) 외부진단 결과

(가)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외부진단은 외부품질심의위원으로 선정된 2인에게 통계품질진단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품질진단 방법의 교육을 진행한 후 각각 진단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외부품질진단은 각각 전문가 2인을 위촉하였으며, 진단 평점은 익명으로 1, 2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진단의 차이, 외부진단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내부진단에서 '관계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외부진단측에서는 공히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그 결과 점수가 크게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진단 사이의 측정 차이는 작성기관의 근거자료에 대한 외부진단위원간의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는 각 위원간의 경험과 직관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진단의 차이, 외부진단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내부진단에서 '관계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외부진단측에서는 공히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그 결과 점수가 크게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진단 사이의 측정 차이는 작성기관의 근거자료에 대한 외부진단위원간의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는 각 위원간의 경험과 직관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 작성절차별로 내부 및 외부진단과의 점수 차이에 대해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내부진단의 경우 품질차원을 묻는 45개(이 중 7-3 및 7-4의 품질차원은 묻지 않음) 문항 중 36개 문항에 응답하여 9개 문항은 '관계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들에 대해 외부진단 1의 경우는 모두 '아니다'의 2점으로, 외부진단 2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5-1(자료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는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5-4(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 6-4(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6-11(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로, 이들 항목들은 '관계 없음'이 아닌 외부진단의 평가대로 '(전혀) 아니다'로 평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내부진단에서 이들 4개 문항이 '전혀 아니다'로 평가할 경우 4.41점에서 4.07점으로 낮아지며, 이는 외부진단 1과 근접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작성절차별 내부 및 외부진단 평가와의 차이를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상세히 살펴보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외부진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던 영역은 자료분석 및 품질 평가로 2.77점이었으며 이는 내부진단 4.20점에 비해 1.43점 낮다. 이러한 점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부진단에서는 2개 항목에서 '관계 없음'으로 평가했음에 대해 외부진단에서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와 대책으로,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조사결과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이나 첨부로 게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함이 지적되었다(5-1). 또한 장애인실태조사 자체에 집중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경제, 사회 현상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변화가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5-4).

다음으로 외부진단의 평균이 낮았던 부문은 문서화 및 자료제공으로 2.91점이었다. 이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내부진단에서는 2개 항목에서 '관계 없음'으로 평가했음에 대해 외부진단에서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의 수록 여부는 보고서에 대체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긴 하나 장애인실태조사 시의 조사지침 등 자료수집 시의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조사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전반적인 통계수집,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제언되었다(6-3). 그러나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의 이용자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6-4). 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의 조사결과 이용 여부에 있어서 통계 원자료는 수집 후 입력이 개괄적으로 완료되는 시점부터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최종완료시까지 통계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 수집 후 보고서 완료시까지의 시점에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여 통계 원자료의 공개가 늦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6-6). 결과 자료의 공표 시점과 공표 절차에 대해서는 공표 일정 자체가 없이, 보고서가 해를 넘겨 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사시점을 앞당겨 조사 연내에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7 및 6-8).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자료의 제공에 있어서는 통계 원자료가 상당부분 유상으로 공개되는 결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타 조사 및 외국의 경우에 비해 이용자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통계 원자료의 무상제공이 반드시 필요함이 지적되었다(6-9).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개인식별 정보를 전부 삭제하거나 마스킹하고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무료로 올리며 연구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 후에 원자료를 제공하는 외국과는 달리,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많이 유지된 채 제공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9개 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구 번호'와 '읍면동 번호'라 할 수 있는데, 시도 번호면 충분하지 굳이 연구자에게 시군구와 읍면동 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와 '재가 또는 시설', '시설 유형'의 정보, 그 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결합하면 충분히 응답자를 식별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6-10). 동일 주제의 타 통계자료의 비교 및 설명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이 유사한 다른 통계자료(예, 장애인고용패널)와 비교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부록에 동일 주제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표를 수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보다

양질의 보고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6-11).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을 제외한 외부진단의 평균 점수는 보통인 3점을 넘기고 있었으며, 자료수집 절차의 경우는 4.50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한 신속한 통계작성 체계의 관리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데이터 구입비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7-1).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 여부에 있어서는 자문위원이 모두 의료계로 구성된 사실로부터 통계 관련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한 외부자원의 동원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통계자료의 활용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다(7-3).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도 국내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7-4).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의 구축은, 자료입력이 조사지의 응답표를 토대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력시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향후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 구축이나 오류점검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다(4-1). 자료 내용 검토 작업의 체계적 실시에 있어서는 자료 내용 이상치에 대한 점검이 사후에 이루어질 경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부분 자동화된 자료 내용검토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4-2). 무응답 실태에 대한 분석은 추적 전화조사 등을 통한 단순 분석표만이 제시되고 있어, 무응답 사례에 대한 대응 및 특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다(4-3).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 당사자 등 관련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이 다소 형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었다. 이용실태의 경우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1-2).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 유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조사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겠지만, 실태조사가 반복되면서 미시적인 개편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년도 통계조사 항목을 주로 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장애인 환경이 변화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1-5).

통계 작성 대상의 명확한 정의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조사모집단을 정의하다 보니 목표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다소 명확하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응답자기 이해하기 쉬운 조사표의 설계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이 너무 많아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사항목수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본규모의 적정 설계 여부에 있어서는 이전 조사인 2005년 실태조사에 비하여 예산상 이유로 표본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로서 전문의만 활용하고 있어 너무 의료적인 것으로만 호를 우려가 제기되었다(3-2).

<표12> 작성절차별 외부진단 결과

	외부1	외부2	외부평균
1.통계작성 기획	4.20	3.00	3.60
2.통계설계	4.57	3.14	3.86
3.자료수집	5.00	4.00	4.50
4.자료입력 및 처리	3.50	3.00	3.25
5.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3.33	2.22	2.77
6.문서화 및 자료제공	3.44	2.38	2.91
7.사후관리	3.33	3.00	3.17
계	3.95	2.78	3.37

외부위원 A와 B는 점수 차이가 1.17점으로 외부위원 1의 경우는 '보통'으로 외부위원 2의 경우는 '아니다'로 평가하여, 외부진단 모두 내부진단의 점수대에 비해 점수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작성절차별 외부진단 점수표는

다음과 같다.

<표13> 작성절차별 점수표

절차	품질지표(조사)	내부	외부 1	외부 2	연구 진
1.통계작성 기획	1-1.통계작성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5	5	5	5
	1-2.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4	3	2	2
	1-3.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5	5	-	5
	1-4.국내·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5	5	3	3
	1-5.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3	2	3
평 점		4.60	4.20	3.00	3.60
2.통계설 계	2-1.작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4	4	4	4
	2-2.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에 친근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가?	4	4	4	4
	2-3.조사항목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있는가?	5	5	4	5
	2-4.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오차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있는가?	4	4	4	4
	2-5.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비취 볼 때 표본 규모는 적정한가?	5	5	1	1
	2-6.표본추출 후 적절한 표본 관리를 통하여 표본수준이 유지되고 있는가?	5	5	2	4
	2-7.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설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총점:32	5	5	3	4
평 점		4.57	4.57	3.14	3.71
3.자료수 집	3-1. 현장 조사 직원을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5	5	4	4
	3-2. 조사기획자는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5	4	3
	3-3.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5	5	5	5
	3-4. 조사기획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5	5	5	5
	3-5. 조사기획자는 조사원의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5	5	3	3
	3-6.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처리	5	5	3	5

절차	품질지표(조사)	내부	외부 1	외부 2	연구 진
	되며, 모든 조사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총점:30				
평 점		5.00	5.00	4.00	4.17
4.자료입 력 및 처리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3	3	2	2
	42. 자료 내용검토(에디팅)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4	4	4
	43. 무응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3	2	2	2
	44. 현장조사부터 집계분석 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총점: 14	5	5	4	5
평 점		4.75	3.50	3.00	3.25
5.자료분 석 및 품질평 가	5-1.자료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는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	2	1	1
	5-2.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	-	-	-
	5-3. 집계결과의 통계표간 일관성을 검토하는가?	5	5	5	5
	5-4.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	-	2	1	1
	5-5.모수를 추정하는 경우,추정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	4	4
	5-6.자료집계단계에서 생성되는 중간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3	3	-	3
	5-7.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4	3	3
	5-8. 공표된 잠정치, 확정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
평 점		4.00	3.33	2.22	3.20
6.문서화 및 자료제 공	6-1.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
	6-2.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5	5	-	5
	6-3.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5	3	4	4
	6-4.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2	1	1
	6-5.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5	5	3	5
	6-6.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5	3	5	3
	6-7.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5	4	1	2
	6-8.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1	1
	6-9.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	4	4	2	2

절차	품질지표(조사)	내부	외부 1	외부 2	연구 진
	고 있는가?				
	6-10.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3	3	2	3
	6-11.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31	-	2	1	1
평 점		4.57	3.44	2.38	2.45
7.사후관리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3	3	2	3
	7-2.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4	4	4
	7-3.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3	3	3	3
	7-4.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	-	1	1
평 점		3.33	3.33	3.0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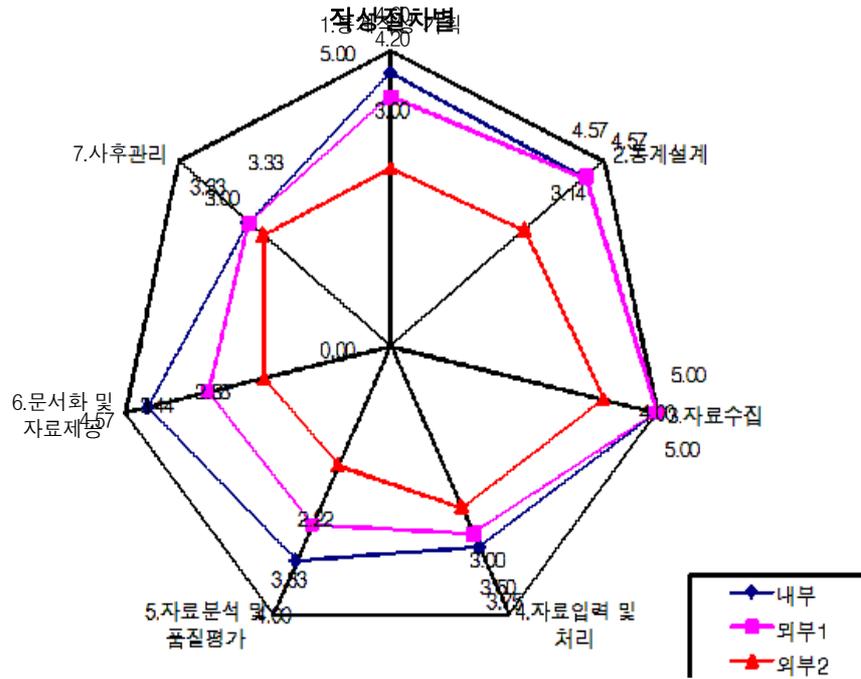
(나)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표14> 품질차원별 외부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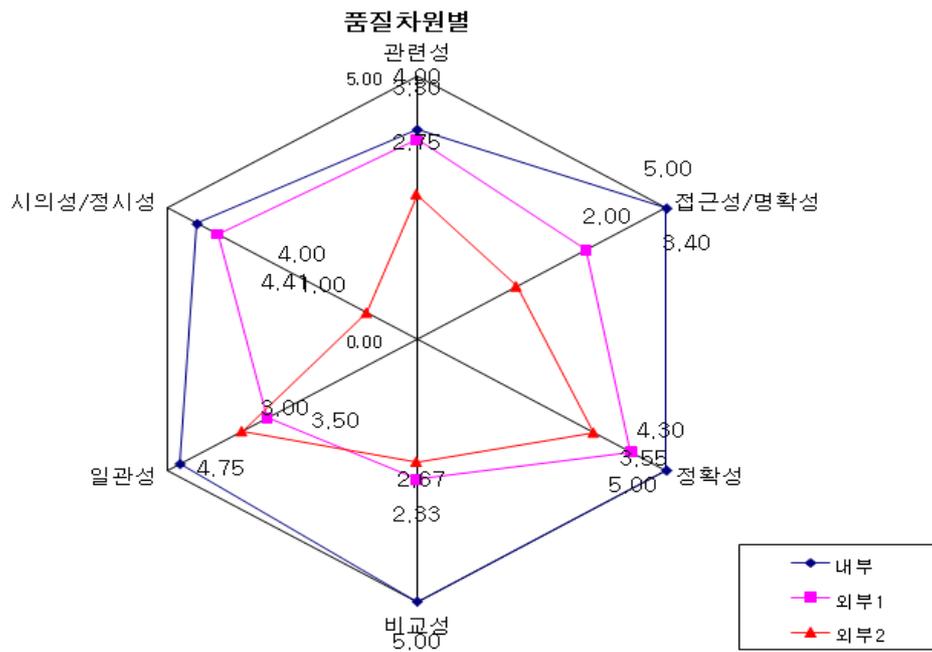
품질차원별	외부1	외부2	외부평균
관련성	3.80	2.75	3.27
접근성/명확성	3.40	2.00	2.70
정확성	4.30	3.55	3.92
비교성	2.67	2.33	2.50
일관성	3.00	3.50	3.25
시의성/정시성	4.00	1.00	2.50
계	3.90	2.97	3.44

품질차원별 외부진단 결과는 <표14>와 같다. 품질차원별로 점수를 계산하였을 때 내부진단에 비해 외부진단의 평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진단의 평균은 3.44점으로 보통의 평가가 내려졌다. 가장 높은 것은 정확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비교성 및 시의성/정시성이었다. 특히 이 비교성 및 시의성/정시성의 내부진단은 모두 5.00임에 비해, 외부진단은 평균 2.50점의 최하의 평가가 내려졌다. 이 두 품질차원에서 내부와 외부위원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가 내려진 이유는 비교성을 묻는 5-2, 5-4와 시의성/정시성을 묻는 6-8 질문항목에 대해 내부에서는 '관계없음'으로 평가한 반면, 외부진단에서는 '(전혀)아니다'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성/정시성을 묻는 6-7질문 항목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에 대해 내부진단에서는 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외부진단에서는 공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해를 넘겨 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가에 있어서는 외부 1에서 '그렇다'와 외부 2에서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외부위원 간에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6-7항목에서는 조사시점을 앞당겨 조사 연내에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 시급하게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내부진단과 외부진단을 종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내부 진단의 경우와 외부 진단의 경우가 비교적 유의미한 점수 차를 보였으며, 내부진단보다 외부진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진단의 차이, 외부진단 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내부진단에서 '관계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외부진단측에서는 공히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여 그 결과 점수가 크게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진단 사이의 측정 차이는 작성기관의 근거자료에 대한 외부진단위원간의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는 각 위원간의 경험과 직관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3> 내부 및 외부 진단의 절차별 점수 비교



<그림4> 내부 및 외부 진단의 품질차원별 점수 비교

(3)연구진 진단

연구진에 의한 작성절차별 진단은 내부 및 외부진단평가가 유의미하게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표15>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종합

	내부	외부1	외부2	연구진
1.통계작성 기획	4.60	4.20	3.00	3.60
2.통계설계	4.57	4.57	3.14	3.71
3.자료수집	5.00	5.00	4.00	4.17
4.자료입력 및 처리	3.75	3.50	3.00	3.25
5.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4.20	3.33	2.22	3.20
6.문서화 및 자료제공	4.57	3.44	2.38	2.45
7.사후관리	3.33	3.33	3.00	2.75
계	4.41	3.95	2.78	3.32

먼저 통계작성 기획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에 대해 작성기관 측에서의 적극적인 수렴 의지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비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제시가 있을 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인다(1-2).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의료모델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므로, 장애인 문제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ICF 등)의 최신 동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대한 시도는 전무하다(1-4).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형식적인 절차는 잘 따르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 장애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조사나 장애인을 둘러싼 시책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 항목은 결여되어 있었다(1-5).

통계설계에 있어서는 표본규모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내부 및 외부1의 경

우 매우 그렇다로, 외부 2의 경우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의 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작성기관 입장에서는 당초 등록장애인을 전제로 한 조사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외부 2의 경우는 그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데서 오는 인식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실태조사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2-5).

조사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 작성기관 내부 교육자와 외부 교육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교육자의 경우 의료직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조사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닌, 의료적 판단에 경도될 위험이 있다(3-2). 통계작성자에 의하면 조사원의 조사 교육에 숙지도는 마지막 시간에 role-play, 질의 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나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3-5).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없어 입력자료에 대한 오류탐지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4-1). 무응답 실태에 대한 분석은 사례수 제시와 전화추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석까지 아울러 수행할 필요가 있다(4-3).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여부에 있어 관계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비록 장애인복지법상 조사항목이 일정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목에 대한 관련 통계의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5-1). 경제 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관계없음이라고 하였으나 전혀 아니다로 판단함이 적절하며, 향후 동태적인 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5-4).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 여부는 내부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 검증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5-7).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는 관계없음으로 하였으나, 전혀 아니다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심층조사의 대상으로 되

었으나, 이러한 변화의 의의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6-4). 원자료는 수집 후 입력이 거의 완료되면 바로 공개해야한다는 외부진단 1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상 공개 원칙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6-6). 이에 관해 통계작성기관인 보사연에서는 원자료에 대한 외부이용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자료사용료 내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무료 이용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원자료 재사용에 따른 자료사용료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는 등 향후 무료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사용료의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은 평가할 수 있다. 결과 자료의 공표 시점에 있어서는 조사의 착수가 9월부터 이루어지므로 장애인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는 사사분기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태 조사와 공표시기는 이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7). 이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측에서는 원자료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오류 수정과 편집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류 수정과 편집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는 CAPI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숙련된 조사원이라 할지라도 문항경로 이동, 논리적 일관성 유지 등을 능숙하게 통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이후에도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컴퓨터 조사프로그램의 활용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자료의 전면 공개가 아닌 단계적 공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표의 지체에 따른 불이익과 조속한 공개로 인한 효과의 합리적 평가로 공표시기의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원과의 조정 시간이 이전 조사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어 공표가 늦어진 경위가 있다. 이처럼 조사에 소용되는 예산 규모 의 확정이나 작성기관의 선정과 계약 등의 절차적 문제 등도 결과적으로 공표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의 사전 예고 여부는 공표일정 자체가 없으므로 관계 없음이 아니라 전혀 아니므로 평가함이 적절할 것이다(6-8).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주로 보고서 형태로 접하는 경우가 많고, 파일의 경우 음성파일 등으로도 제공할 것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무엇보다 원자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6-9).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 및 분석 여부는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장애인고용패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자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이용시도가 요망된다(6-11).

내부진단에서는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외부진단²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성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7-4). 다만 전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사 예산이 감액되는 가운데 방대한 조사항목의 프로그래밍 개발 비용의 확보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품질차원별 진단 결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해 연구진이 품질차원별로 진단한 결과는 평균 3.15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 이하의 차원을 낮은 순대로 나타내면 시의성/정시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일관성이었으며, 평균 이상의 차원을 높은 순대로 나타내면 관련성, 정확성의 순이었다. 6가지 품질차원에 대한 평가의 순위는 외부진단과 동일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에서 연구진은 관련성을, 외부진단에서는 정확성을 나타내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16>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 종합

품질차원별	내부	외부1	외부2	연구진
관련성	4.00	3.80	2.75	3.75
접근성/명확성	5.00	3.40	2.00	2.00
정확성	5.00	4.30	3.55	3.73
비교성	5.00	2.67	2.33	2.33
일관성	4.75	3.00	3.50	3.00
시의성/정시성	4.41	4.00	1.00	1.50
계	4.44	3.90	2.97	3.15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

가. 진단 내용 및 방법

수집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대상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조사에 직접 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응답자인 등록장애인의 주소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다양한 장애의 특성상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유로 응답자 리스트를 확보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방문”조사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통계작성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당시 조사통계팀 담당자와 조사관리자를 통해서 재가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자료수집시 현장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었는지, 조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고, 교육이 이루

어졌는지, 대상가구에서 불응하거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현장 대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설장애인 조사는 우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하셨는지 등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 요인들을 점검하여, 여기서 얻어진 답변을 정리하여 진단하도록 한다.

나. 진단결과

(1)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자료수집시 현장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었는가의 진단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재가와 시설장애인 모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이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도 실태조사 때 새로이 추가된 시설장애인의 심층조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장애인 대상의 실태조사 이외에 부가적으로 시설장애인의 기본적인 현황(시설거주 장애인 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시설조사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편조사방식으로 시설의 실무책임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른 조사는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실태(심층)조사표에 의한 조사이고, 시설조사는 시설장애인수를 파악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계작성자의 위와 같은 언급이 실제 실태조사서에서도 그대로 읽혀진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실태보고서의 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조사는 우편설문조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우편설문조사”로 함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보다 확실하게는 2쪽 하단의 1)장애인 개별조사의 조사모집단에 대해, “~재가 및 시설 등

록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시설 등록장애인의 일부가 몇 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고서 전체에서, 시설장애인조사와 시설조사를 명확히 구분해내기엔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의 의의와 실제로 몇 명에게 협조를 받았으며, 나아가 가능하다면 재가와 시설장애인 심층조사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 통계작성기관의 작성 책임을 여기까지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시 피조사원으로부터의 질문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처 매뉴얼(지침)의 구축 여부에 있어서는 질문이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지침에서 명확히 제시된 내용일 경우 지침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중앙(연구원)으로 연락하여 그에 따른 바른 지침이나 답변 등을 지시받도록 지침서에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모든 조사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즉시 전화나 메일을 통한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여 동일한 대처를 하도록 하였고 언급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원의 역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불허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2) 조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진단

조사원 선발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선발기준은 조사 경험이 있는 자로서 특히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 경험자 내지는 장애인 대상의 조사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조사원의 연령이나 학력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조사시의 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조사원의 수당 수준 등은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판단되는 바, 조사원의 사고시 처리규정 관련해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조사시행시점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조사원 수당의 경우 내부 단가기준에 의거하여 1인 기준 1일 43,750 원(2008년 단가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조사 여건

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차기 조사 때에는 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사원 교육을 위해 본 조사 실시 이전 조사개요와 조사항목 해설 및 항목별 기입요령 등을 포함한 조사지침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사 실시 이전 조사원 대상으로 4(조사원)-6(지도원)일 간의 교육일정에 따른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role-play 등도 실시하여 조사항목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하였다. 둘째, 특히 장애특성과 관련된 조사내용의 경우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를 강사로 하여 장애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중 조사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중 직접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사원들이 조사항목에 대해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넷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동영상, 관련 자료의 팸플릿, 사진 등을 활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교육은 9월 2일부터 5일에 걸쳐 4일 동안 매일 9시 ~ 6시까지 8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주로 조사개요, 표본,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공통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항목들을 대체로 망라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자료는 “조사지침서”로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크게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 장애인 실태조사표 작성지침, 부록의 세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사원 교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강사진과 교육의 숙지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강사진은 통계작성기관내 연구진과 외부의 강사들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경우 외부강사진은 장애특성 관련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기본적으로 의료모델에 의거하고 있으며, 장애의 특성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또한 의료적 판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적 장애와 일상생활 속 장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의료적 판단 외에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외부 강사진의 구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교육의 숙지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에 role-play, 질의 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대상가구에서 불응하거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현장대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진단

대상가구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다시 한번 조사 협조 요청을 하여 조사에 응할 경우는 조사를 실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여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조사대상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요컨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조사에 불응한 대상자를 억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7,000명은 조사완료수를 의미한다.

(4) 시설장애인 조사에 대한 우편조사의 회수율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시설장애인의 경우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시설장애인도 직접 방문면접조사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전 조사와 달리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시설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는 바,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는 총 1,068개의 생활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에 협조 요청 공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조사응답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872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81.6%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5.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가. 진단내용 및 방법

통계자료 서비스 점검을 위해서 본 통계의 발간물 내용을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는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와 조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를 사용하여 진단하였다.

<표17> 공표자료 오류 점검사항

점검사항	세부 진단항목
수치자료 점검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여부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2-1. 통계표 형식의 정확성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적절성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2-5. 단위 표기의 정확성
	2-6. 주석 표시의 정확성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용어해설 부분 점검	3-1. 용어해설의 적절성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3-3. 용어의 통일성
표기방법 등 기타오류 점검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4-2. 한글 및 영문 등의 오타자
	4-3. 영문표기의 적절성
	4-4.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총점검	19개 문항

<표18>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사항

점검사항	세부 진단항목	점검사항	세부 진단항목
이용자를 위하여	1-1. 소개	모집단 및 표본설계	3-1. 목표 모집단
	1-2. 부록(참고자료)		3-2. 조사 모집단
	1-3. 기호		3-3. 모집단의 근접성
	1-4. 잠정치, 확정치		3-4. 표본틀(표본조사)
	1-5. 자료 출처		3-5. 표본크기(표본조사)
	1-6. 제공 매체		3-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1-7. 문의처		3-7. 표본틀 내역(표본조사)
			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조사정보	2-1. 통계작성 목적	자료집계 및 추정	4-1. 가중치
	2-2. 통계 연혁		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
	2-3. 통계작성 범위(대상)		4-3. 표준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2-4. 적용 기준		4-4. 계절조정 기법
	2-5. 조사 항목		4-5. 자료의 신뢰성
	2-6. 조사 주기(기간)		4-6. 무응답 현황
	2-7. 자료수집 방법		4-7. 응답자 분석
	2-8. 자료수집 체계		4-8. 자료집계
	2-9. 자료수집 양식 견본		
	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		
	2-11. 용어 설명		
	2-12. 공표 방법		
총점검	35개 문항		

나. 진단결과

(1) 공표자료오류 점검

(가) 공표자료 오류 점검

① 수치자료 점검

수치자료 점검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통계 공표자료의 수치가 통계작성기관의 DB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 방법 변경, 통계수치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진단이다. 이 통계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 수치의 일치 여부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잘못 계산하여 71.7%에서 34.4%로 보고서 간행 후 정정보도를 냈다.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의 경우, 개편작업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개편 내용에 따른 과정, 방법, 결과 등에 대한 공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통계수치의 정확성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는 내부진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해당사항이 없었다. 다만 장애인실태조사가 7회까지 수행된 결과, 조사 항목의 부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시계열상의 비교도 가능하리라 본다. 최초의 실태조사인 1980년 제1회 조사부터 1995년 제4회 조사까지는 가구조사, 장애공통조사, 장애유형별조사의 비교가 가능하며, 2000년 제5회 조사와 2005년 제 6회 조사는 가구조사표와 개별조사표(장애유형별 특성, 장애공통 사항)로 크게 나누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진단은 통계표 형식이 정확하고 내용이 적절한지, 기호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일관된 표기를 하고 있는지, 단위와 주석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도표나 그림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통계의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가 별

도로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③ 용어해설 부분 점검

용어해설 부분은 발간자료에 제시된 주요 용어의 정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2008)>, <한국통계조사현황(2006)> 등 인용한 통계와 비교시의 용어 일치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진단하는 부분이다. 점검결과 이 통계의 용어해설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표기방법 등 기타오류 점검

표기방법 등 기타오류 점검은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과 한글 및 영문 등의 맞춤법, 오타, 누락된 단어 등을 확인하고, 영문 표기·설명시 의미에 맞는 단어와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통계표의 제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이 통계의 표기방법 등 기타오류 점검 결과 대체로 적절한 표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은 이용자가 본 통계의 간행물이나 통계 DB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 정보(meta-data)를 수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록내용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통계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나 2008년 결과가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로, 발간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이용자 편의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이용자를 위하여 7개 항목, 조사정보 12개 항목, 모집단 및 표본설계 8개, 자료집계 및 추정 8개로 모두 4개의 영역에서 35개 항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록항목수가 20개, 수록물이

57.1%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보고서 이용시의 편의사항이 보통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19>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결과

이용자편의 세부사항	권장항목수	수룩항목수(수룩률)
이용자를 위하여	7	1
조사정보	12	7
모집단 및 표본설계	8	8
자료집계 및 추정	8	4
합계	35	20(57.1%)

① 이용자를 위하여

이 부분은 공표자료가 이용자가 통계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통계에 관한 소개와 부록(참고자료), 기호 설명, 통계 값의 잠정치와 확정치, 인용된 정보의 자료출처, 자료 제공 매체의 접근 방법과 문의처가 수록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진단이다. 이 통계에는 자료 출처를 소개한 것 외에 소개, 부록(참고자료), 잠정치 및 확정치, 제공 매체, 문의처 등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통계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② 조사정보

이 부분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써, 통계의 작성 목적과 연혁, 작성범위, 적용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 방법 및 체계, 용어설명 등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진단이다. 이 통계에는 통계작성 목적, 연혁, 범위, 작성항목, 자

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체계,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고 있으나, 적용 기준, 일부 조사대상에 대한 작성 주기의 누락, 자료수집 양식 견본, 용어 설명, 공표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③ 모집단 및 표본설계

이 부분에서는 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설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이다. 이 통계에서는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모집단의 근접성, 표본틀, 표본크기, 표본틀의 변경, 표본들에 대한 요약 정보, 표본설계방법의 모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단, 모집단의 근접성은 2005년 조사 때와 달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2008년 조사의 커버리지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다.

④ 자료집계 및 추정

자료집계 및 추정 부분에서는 조사된 통계의 자료집계 과정에서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되었으며, 모수추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오차 추정치는 얼마인지, 시계열 조정요인 기법, 자료의 신뢰성 수준, 무응답 현황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항목이다. 이 통계에서는 통계자료 작성시의 가중치, 모수추정 방법,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현황, 응답자 분석, 자료집계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조정 기법에 있어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하였다.

제 3 절 통계품질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진단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품질의 주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20> 장애인실태조사의 향후 개선방안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조사시기의 개선	10월~11월에는 다음 해 장애인복지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 시행을 3월 이전에 실행하도록 검토.	정확성/명확성 향상	통계작성기관의 용역 선정 일정의 지체로 조사 지체	p32
이용자의 의견수렴	의료관계자 위주의 자문위원회를 탈피해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렴	관련성 향상	-	p84
자료 접근경로의 다양성 확보	웹사이트 및 통계관련 포털사이트의 발간물 수록, 향후 발간물 형태 다양화 실천(CD, 음성파일 제공 등)	접근성 향상	저작권 문제의 확보	p83
원자료 무상 제공	PDF가 아닌 이용 희망자가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공	접근성 향상	최소한의 자료 관리비 발생, 관련내부규정 개정	p107
용어의 설명	설문지와 발간물에 용어의 설명 부분을 별도로 작성(부록 및 개별 자료 첨부)	이용자 만족도, 정확성 향상	-	p81, 101
예산증대	조사대상에 미등록장애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더불어 기존 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도 일정 필요함.	일관성, 정확성 향상	보건복지부 외 국가적 이해가 선결	p27
설문지 보완 및 수정	설문문항 중 타 장애인관련 DB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조사 항목의 삭제와 중복되는 문항의 경우 다른 통계와 겹쳐지지 않도록 보완 및 보충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사 실행	일관성, 비교성 향상	관련 부처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공 비협조, 장애인복지법 개정	p108
국제비교 및 시계열 분석 가능한 통계 연구	국제비교 연구 추진 및 시계열 분석 가능 자료 지속적 생성	비교성 향상	장애인복지법상 조사항목의 개정	p103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조항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를 개정하여 타 조사와 중복 항목을 조정함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항목 추가	관련성 향상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p17
장애관련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장애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 기관의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이 경우, 통계청의 주된 역할 기대.	관련성, 일관성 향상	관련 부처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공 비협조	p109

먼저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2008년 장애인실태 조사의 서론에서 2007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선정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2005년 실태조사시의 예산인 9억 4천여 만원에서 2008년 조사에서는 1억4천여만 감액된 8억원의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이 예산 규모는 장애인 관련 타 조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예산은 679,000천원이었으며, 2008년 특수교육실태조사의 예산은 장애인실태조사의 예산을 초과한 1,000,000천원이었다. 단일주제조사의 예산규모가 이러한데, 장애인 실태의 기본적 조사로서 또한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와 미등록장애인이 실제로 다수 존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예산 규모의 원상 복귀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대폭 증액하여 장애인들의 실태 및 욕구 파악에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생산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이다. 먼저 2008년 실태조사부터는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로 이상적으로는 매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사항목의 개편이 따라야 할 것이다. 조사 공표는 차기년도 장애인정책을 세우는 10월쯤에는 나와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종전의 원자료 유료화 공개 지침에서 무료 공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료 유료화 공개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 최근 대학원생 등에 대한 무료 이용이나 이용 단가를 낮추는 등의 개선도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향후 전면 무료화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발간물과 더불어 CD로 보급하면 본 조사의 활용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인의 생애주기 반영한 조

사가 되어야 한다. 즉 장애성인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아동기와 노년기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장애인조사도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시에는 종이 조사표가 아닌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및 시간의 절약과 더불어 조사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부작성 절차별로 진단한 결과, 통계작성 기획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에 대해 작성기관 측에서의 적극적인 수렴 의지가 요구된다. 장애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만큼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장애인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거시적으로는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의료모델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므로, 장애인 문제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ICF 등)의 최신 동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조사나 장애인을 둘러싼 시책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원에 대한 외부교육자의 경우 의료적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조사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닌, 의료적 판단에 경도될 위험이 있어 다양한 전문직에 의한 강사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여부에서는 비록 장애인복지법상 조사항목이 일정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목에 대한 관련 통계의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태적인 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 및 분석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패널 등과 같은 관련자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이용시도가 요망된다.

넷째,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의 의의와 실제로 몇 명에게 협조를 받았으며, 나아가 가능하다면 재가와 시설장애인 심층조사 결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원 관계에 있어 먼저 수당의 경우 조달청 단가기준에 의거하여 1인 기준 1일 43,750원(2008년 단가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조사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차기 조사 때에는 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육의 숙지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에 role-play, 질의 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 3장 발전전략 및 로드맵

제 1절 해외 사례

개별 통계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되는 단일 통계로 작성되거나, 어떤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통계로 작성된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한 통계는 하나의 통계를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분야 일부로서 특화된 통계와 분야 전반을 다루는 일반 통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해외사례 분석의 목적은 단일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와 해외의 유사통계 자료를 비교해 봄으로써 본 통계의 용어, 내용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수한 통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한 분야에 대한 통계는 국가가 기본수요 충족을 위해 직접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나, 법에서 제도화하여 관련 승인이나 허가 등 보고받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은 나름의 특성과 관련성을 가지게 되며 서로 간에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도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가지는 특징과 관련성, 평소에 나타나는 분야 통계의 문제점, 해외의 통계 선진 국가들의 작성사례나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나 통계의 작성수준 등을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작성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단,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목적과 내용은 매우 상이할 수 있음에 비교분석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개념 정의 자체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산물로, 장애 개념에 따른 사회보장의 질과 양이라는 것은 국가와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자국에의 적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 해외 사례 내용정리

가.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http://www.cdc.gov/nchs/nhis.htm>))

국민건강면접조사가 1957년 이래로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는 동안, 조사 내용은 약 10~1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다. 1996년에는 대대적인 설문지의 개정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판 질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수행되었으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건강을 주제로 한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데이터는 개별적 가구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다. 50년 넘게 미국 인구통계국은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데이터수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건강의 상태, 건강 케어 접근, 국민 건강의 달성도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국민건강면접조사는 이 기관의 가구조사를 계속적으로 통합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전국 가족 성장 조사는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샘플링 프레임과 의료지출의 패널 조사 샘플의 반을 사용한다.

국민건강면접조사는 국민의 일반 질병에 관한 것을 질문하지만 장애 자체만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이 조사의 장점은 장애인만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 나타나는 사실이 장애인만의 특성인지 비장애인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알 수 없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가 매우 수월하며,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제시에 유용하다는데 있다. 이하에서는 이 조사의 목적과 범위, 구체적인 질문 내용, 데이터 수집 과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DC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website. At the top, there is the CDC logo and the tex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Your Online Source for Credible Health Information'.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with letters A-Z. The main heading i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with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nd various sub-links like 'About NHIS', 'What's New', etc. The main content area has a 'What's New' section with several bullet points: 'Dental Insurance for Persons Under Age 65 Year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United States, 2008 (6/2010)', '2008 NHIS Sample Adult File Re-release (5/27/2010)', 'Desig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Adoptive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2008 [PDF - 920 KB] (5/18/2010)', 'Wireless Substitution: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July-December 2009 (5/12/2010)', '2010 NHIS Draft Survey Questionnaires (3/2010)', 'Selected Estimates Based on Data From the January-September 2009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3/24/2010)',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January-September 2009 (3/24/2010)'. There is also a 'Selected Participants' section and a 'Contact Us' section with address and phone information. At the bottom, there are navigation links and the USA.gov logo.

<그림5>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출처: <http://www.cdc.gov/nchs/nhis.htm>

○ 목적과 범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데이터는 질환과 장애의 경향을 모니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건강 및 휴먼 서비스국을 통해 넓게 사용된다. 이 조사는 인터뷰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가구 면접조사이다. 이 경우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인해 인구계층의 몇몇 분절은 샘플이나 조사의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사람들의 예는 장기요양시설의 환자들이나 병역중인 군인들, 수형자들, 외국에 사는 미국민 등이다.

○ 질문지의 내용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질문지는 1982-1996년 동안, 첫째, 기본 건강 및 질병 항목(핵심 질문으로 알려짐), 둘째,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핵심 질문은 현재의 건강 토픽이 욕구에 근거하도록 변한데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는다. 수집 중에 건강 상태와 활용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핵심 질문은 보험, 건강 케어 혹은 건강 행동에 대한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 게다가 핵심 질문 중의 대부분의 인터뷰 시간은 개인을 좀 더 특징짓는 정보가 아닌 의사의 방문과 입원같은 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할당되었다. 1997년의 개정판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개정판의 질문은 핵심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질문은 연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으며, 1년 이상의 경향 분석과 정보를 다루고 있어 분석적 목적을 위한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풀로 되어 있다. 핵심 질문은 가구, 가족, 표본 성인, 표본 아동의 네 개 요소로 구성된다. 가구 요인은 특정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한정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 요인은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부가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의 상태와 한계, 질환, 건강 케어 접근 및 활용, 건강 보험, 수입과 자산에 있어 각 가족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 핵심 요소는 이 조사가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통합적 조사를 위한 표본 프레임으로 기능하게 한다.

○정보 수집 절차

정보는 국가통계센터에 의한 특화된 과정에 따라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고용되고 훈련된 면접조사원에 의해 수행된다. 가족 핵심 요소에 있어 인터뷰 시점에 있어 가족의 17세 이상의 모든 성인 구성원이 면접에 참가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로 한다. 간소한 성인 질문을 위해 가족 당 한 명의 구성원이 무작위로 추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개인은 이 섹션에 있어 질문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을 행 한다. 표본 아동 질문지를 위한 정보는 가구로부터 보통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정보로 얻는다.

계약 동의에 의거하여 인구통계국은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데이터수집기관이 된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면접조사는 약 400명의 면접조사원을 두는데 이들은 각각 12곳의 지역 인구통계사무소의 건강조사면접원에 의해 훈련되고 감독을 받는다. 슈퍼바이저는 시청 공무원이며, 면접조사원은 파트타임이다. 면접조사원은 기본적인 면접 절차를 통해 훈련 받으며, 인구통계국만의 절차와 개념을 따른다.

나.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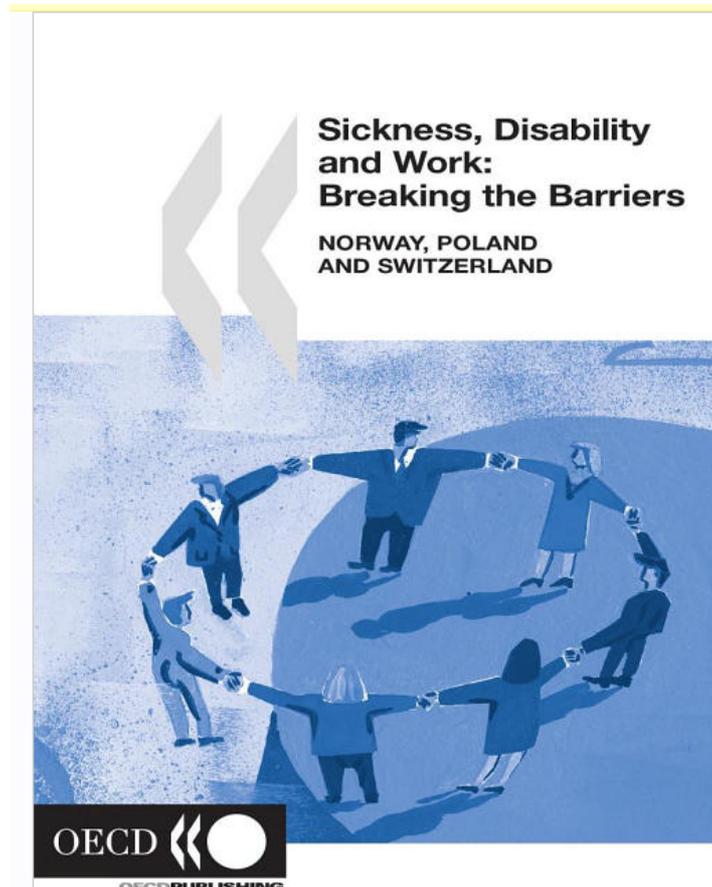
장애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적 정책 분야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의료적 상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로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핵심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된 수입원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장애수당과 질병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적 건강 상태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노동시장 참가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장애 수당의 청구자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 건강, 수당 체계의 실패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이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이 분야에서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더욱 잘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OECD에서는 선정된 몇몇 국가에서의 질병, 장애, 노동에 대한 세 가지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사는 2006년에 출간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후에 시리즈로 일련의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보고서인 2006년판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의 목차

장	하위 내용	비고
제1장. 주된 성과와 핵심적인 정책 과제	정책결정자가 직면한 제도적 도전, 사회적·경제적 요인들, 결론	장애의 정의와 측정
제2장. 장기적 이익에 대한 통제적인 접근	질병 관리, 장애 관리, 재활 관리	-
제3장. 증가하는 고용 기회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고용 지원, 직업 알선과 유지 기회의 향상, 고용친화적 장애 이익 구조의 구축	-
제4장. 경제적 유인책의 강화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수입의 보장, 장애수당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유인책의 증대, 고용 유인책의 증대	상이한 가계 유형의 배경
제5장.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 향상	감면혜택 기관을 위한 유인책, 장애수당은 마지막 리조트를 위한 지지인가, 더 나은 기관간 협력	-
제6장. 최근 및 향후 개혁에 대한 평가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최신 및 향후 개혁의 충격	-
제7장. 미래를 위한 의제	노르웨이의 핵심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 폴란드의 핵심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 스위스의 핵심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	-

상기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는 한 국가에서 자국민 중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일반적 조사가 아닌,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문제의 주요 토픽을 다루고자 하는데 큰 특징이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문헌자료는 총 61개로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림6> OECD "질병, 장애, 노동"조사

출처: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ocument>)

다. 일본 <장애인백서(障害者白書)>

장애인백서는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제11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개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연차보고서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障害者施策トップ](#) > [障害者白書](#) > 平成22年版 概要(PDF形式)

平成21年度 障害者施策の概況

障害者白書 概要 [PDF版]

障害者白書とは

障害者白書は、障害者基本法(昭和三十五年五月二十一日法律第84号)第11条に基づき、障害者のために講じた施策の概況について、毎年国会に報告しているものである。

今回の白書は17回目に当たり、「障害者基本計画」の分野別施策の基本的方向の柱立てに沿って、平成21年度を中心に障害者のために講じた施策を、「相互の理解と交流」、「社会参加へ向けた自立の基盤づくり」、「日々の暮らしの基盤づくり」、「住みよい環境の基盤づくり」の4つの視点に立ってまとめている。

平成21年度を中心とした障害者施策の取組

- I. 障害者施策の概況
 - [<1> \(419KB\)](#)
 - [<2> \(269KB\)](#)
 - [<3> \(303KB\)](#)
 - [<4> \(222KB\)](#)
- II. [相互の理解と交流 \(241KB\)](#)
- III. [社会参加へ向けた自立の基盤づくり \(307KB\)](#)
- IV. [日々の暮らしの基盤づくり \(329KB\)](#)
- V. [住みよい環境の基盤づくり \(255KB\)](#)

<그림7> 일본 장애인백서

출처: 후생노동성 공생사회 정책총괄관

(<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2hakusho/gaiyou/index-pdf.html>)

장애인백서는 전년도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해 강구되는 시책의 개요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2010년 백서는 17번째에 해당된다. 장애인수의 전체 상황, 삶, 교육, 취업, 수입,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관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 조사방식과 달리 직접 조사가 아닌 기존의 통계조사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와 차별화된다. 2010년판 장애인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시책 관련 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일본 장애인백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자료의 예

기관명	자료명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아·자실체조사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등조사
후생노동성	지적장애아(자)기초조사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후생노동성	정신장애자사회복지서비스등조사
후생노동성	정신장애자사회복지서비스육구등조사
후생노동성	보건·위생업무보고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체제정비상황
국토교통성	이동등원활화실현등보고서
경시청	배리어프리대응형신호기의 설치상황 외

장애인백서는 또한 작성년도의 국내외 장애인시책의 변화를 그 때 그 때마다 반영하는 특색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는 장애인권리조약의 체결에 즈음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사항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 조약이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으로 현재 가능한 조기의 체결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최근의 장애인시책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기본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따라 2008년도를 중심으로 정부가 강구해온 장애인시책의 구체적인 실천상황 등을 기술하고 있다.

2010년의 장애인백서의 특색을 살펴보면, “장애인기본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따라 2009년도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해 강구된 시책을 ‘상호 이해와 교류’, ‘사회참가를 향한 자립기반 조성’, ‘일상생활의 기반 조성’, ‘살기 좋은 환경기반 조성’의 4가지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장애인에게 관련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어 2009년 12월, 내각에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이하 「본부」)가 설치되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가칭)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를 비롯한 장애인제도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당면한 5년간을 장애인 제도에 관계되는 개혁의 집중 기간으로 하여 개혁의 추진에 관

한 종합 조정, 개혁의 기본적인 방침안의 작성·추진, 「장애(障害)」라는 표기의 방향성에 관해 검토하거나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제도 개혁추진회의」가 2010년 1월부터 개최되어, 제도개혁을 향해 정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

제2장 이후에서는 「상호 이해와 교류」, 「사회참가를 향한 자립 기반 조성」, 「일상 생활의 기반 조성」 「살기 좋은 환경 기반 조성」의 각각의 테마에 대해 최근 시책의 동향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9년도에 내각부가 실시한 장애인에의 「계발·홍보」 등에 관한 의식 조사의 결과와 칼럼으로서 각 지역에서의 기업,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NGO등에 의해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생사회 실천 활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共生社會政策總括官, <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

이하, 장애인백서의 목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3> 일본 장애인백서의 내용 구성

제1장 장애인시책의 종합적 실태
제1절 장애인시책의 동향
제2절 장애인시책의 추진체제
제3절 장애인기본계획,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의 추진
제4절 지방장애인계획의 책정상황
제2장 상호 이해와 교류
제1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계발홍보 등에 관한 시책
제2절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한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제3장 사회참가를 향한 자립의 기반 구축
제1절 장애아동의 교육·육성에 관한 시책
제2절 고용·취업의 추진시책
제4장 일상생활의 기반 구축
제1절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제2절 보건·의료 시책
제5장 살기 좋은 환경 기반의 구축
제1절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책
제2절 장애인의 정보·의사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부록
1. 장애인기본법
2. 장애인기본계획
3.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상호 지지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의 실천
4.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번역문)
5. 주요 국가의 장애인에 관계되는 차별금지법제의 개요
6. 장애아·인의 상황: 전체 상황, 연령계층별 장애인수,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장애의 발생연령 및 원인, 장애의 중증·중복화
7. 상담창구

다. 기타 일본의 개별적 장애인 실태 조사

위에서 제시한 장애인백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통계집(200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즉 장애인백서 또한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다양한 장애관련 통계조사 및 학술 연구조사의 자료를 수집·재가공하여 작성되었다. 결국 수록된 자료의 통계학적 속성이 상이한데, 이로 인해 자료의 통계적 일관성이나 자료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양한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각 조사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모두 수록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각 조사자료의 취지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몇 가지 대표적인 장애인관련 실태조사를 소개하고 이들 조사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1)신체장애아·인 등 실태조사(<http://www.mhlw.go.jp/toukei/list/108-1.html>)

· 조사 목적

재가 신체장애아·인의 장애의 종류·정도·원인 등의 상황, 일상생활의 상황, 취업 상황, 복지요구의 소지 상황, 장애별 요구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체장애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5년마다 실시.

· 조사 대상

전국의 재가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 수첩소지자 및 수첩은 미소지라도 신체장애인복지법 특별 표시에서 제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2000년 국세조사구에서 총화무작위추출한 2,600(신체장애아는 9,800) 지구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인.

· 조사 사항

연령별/장애 종류별/정도별 인원, 부양 상황, 외출 상황, 수당·연금의 수급 상황, 취업 상황, 재가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

· 조사 시기

2000년 7월 1일

· 조사 방법

조사원이 조사지구내의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조사 대상의 유무를 확인. 조사 대상이 있을 경우는, 조사표를 건네 기입 및 우송에 의한 반송을 의뢰.

(2) 지적장애아(인) 기초조사(<http://www.mhlw.go.jp/toukei/list/101-1.html>)

· 조사 목적

재가 지적장애아(인)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장애아(인) 기초조사 복지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5년마다 실시.

· 조사 대상

전국의 재가 지적장애아(인)를 대상으로, 2000년 국세 조사구에서 150분의 1의 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지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아(인)을 대상.

· 조사 사항

장애의 정도별 인원, 생활의 장의 상황, 외출 상황, 의논 상대, 취업 상황, 수당·연금의 수급 상황 등

· 조사 시기

2005년 11월 1일

· 조사 방법

조사원이 조사지구내의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 등을 설명 후, 조사 대상의 유무를 확인. 조사 대상이 있을 경우는 조사표를 건네주고 기입 및 우송에 의한 반송을 의뢰.

(3) 장애인고용실태(<http://www.mhlw.go.jp/toukei/list/111-1.html>)

본 조사는 민간사업소의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하의 2가지 조사를 실시.

첫째, 사업소 조사. 전국의 종업원 5명 이상의 민영사업소 약 7,500사업소를 대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의 종류·정도,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해 조사. 회수수는 5,511사업소 (회수율 73.2%).

둘째, 개인조사. 사업소 조사의 대상사업소에 상시 고용되어 있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생활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 조사. 회수수는 신체장애인 12,393명(회수율 61.4%), 지적장애인 1,678명(회수율 68.8%), 정신장애인 311명(회수율 41.2%).

상기의 실태조사들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장애아인 조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부터 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조사주기는 4년, 5년, 7년, 10년 등 다양하게 걸쳐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5년 주기가 일반적이었다.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뀌었는데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주체의 경우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개별 통계의 특성상 사회 원호국의 개별 담당과는 상이하더라도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부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 비해 일본의 관련 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

(수첩소지자) 외 장애유형별 복지법의 특별 표시에서 제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러한 원칙은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최신의 조사까지 줄곧 지켜지고 있었다.

실제 조사에 즈음해서는 개별조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기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편 응답도 병행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운 현실에 있어 유연한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우편 응답의 경우 해당 장애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 작성되어 송부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표예정인 경우, 예를 들어 2008년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일: 2010년 2월 9일, 인터넷 정보URL(<http://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08/index.html>)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발간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기호의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계수S가 없는 경우 -”, “통계 항목이 있을 수 없을 경우 .”, “계수 S가 불명하거나 계수를 나타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단위의 1/2미만 S의 경우 0, 0.0”, “감소수S(율)의 경우 Δ ”가 그것이다.

(4) 동경도 장애인실태조사

이 조사의 목적은 5년에 한 번씩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동경도 장애인 시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있다. 이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24> 2008년도 동경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

(1)조사 기준일	2008년 10월 15일(조사기간 2008년 10월 15일~11월 14일)
(2)조사 대상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 4,000명, 지적장애인 1,200명, 정신장애인 800명
(3)조사 방법	조사원이 조사 대상의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대인면접식에 의해 실시. 본인회답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할 경우 가족 등이 대리 회답. 조사 대상이 희망 시, 점자조사표 또는 확대 문자조사표에 의해 조사. 수화통역의 파견.
(4)집계의 대상	①신체장애인: 조사 대상 4,000명 중 회답을 얻을 수 있었던 2,762명 (회수율 69.1%) ②지능장애: 조사 대상 1,200명 중, 회답을 얻을 수 있었던 805명 (회수율 67.1%) ③정신장애인: 조사 대상 800명 중, 회답을 얻을 수 있었던 529명 (회수율 66.1%)

출처: 2008년도 동경도 장애인실태조사
(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chosa_tokei)

동경도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동경도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을 보면, 세 개 장애별로 기본적 속성, 장애 상황, 건강/의료, 일상생활의 상황, 취업 상황, 경제기반, 사회참가 등, 정보의 입수와 의사소통 수단,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장애복지서비스 등, 시설입소(시설입소자 대상), 그 외 복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들은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항목에서 대체로 망라하고 있는 항목들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자유의견(제6장), 기타(제8장)에 향후과제와 위원의 의견 및 감상문, 부록에 용어의 설명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유의견(복수응답)에서는 조사에 즈음하여 자유기술식에 의해 ①가족에 관한 사항(예: 가족에게 감사,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음 등), ②삶의 보람(예: 여행,

의출, 운전, 종교 등), ③생활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험(예: 행정예의 불만, 장애에 관한 이해, 대중교통수단의 무장애화 등), ④긴급시의 곤란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예: 혼자 있는 경우, 피난방법 등), ⑤동경도·시군구에 바라는 점(예: 크게 서비스 및 상담, 마을 만들기·주택·교통수단 등), ⑥그 외 의견(예: 크게 생활/가계/수입, 주거/시설, 취업/일, 의료/건강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안은 건수, 건수의 게재가 없는 것은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비록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정책수립화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도 예상되나, 조사 항목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8장 기타”에서는 향후 과제와 위원의 의견 및 감상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향후 과제는 본 조사가 동경도사회복지기초조사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이어서 조사된 것임을 밝히면서 조사에 즈음한 과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검토회에서는 조사대상자에 관해 장애인수첩의 소지자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수첩을 갖고 있지 않은 난병환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장애 범주의 확대에 따른 국가적 방침이나 제도체계와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조사검토회에 관해서는 조사 실시에 관해 설명할 때에 검토위원 안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 차후에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차기 조사 때의 검토위원의 선출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적장애인 본인의 응답에 관해서는 지적장애의 특성상 직접 응답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인 응답, 보호자가 있으나 본인의 의지로 응답, 거의 보호자가 응답, 시설직원 등이 응답, 본인이 없어 부모나 지원자가 응답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응답하거나 보호자가 있으나 본인의 의지로 응답의 비율이 타 장애에 비해 낮았던 사실로부터 이 항목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해하기 쉬운 조사표의 설계 등)의 강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의 의견 및 감상문은 장애인 당사자대표를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부터

터 향후의 조사를 위한 의견과 감상문을 소개하고 있다. 의견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하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난병자를 포함한 조사설계의 필요성, 동경도와 시군구 계획과의 연계 중요성,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시책의 효과 등 관련요인을 평가할 수 있을 것 등이다. 감상문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관계자에 의해 작성되는데, 정신장애인이 조사에 포함되는 성과 등을 평가하면서도 난병환자, 고차뇌기능환자,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수첩 미소지자(미등록자) 등의 생활실태도 파악할 것이 필요하며, 각 장애유형별 생활실태와 욕구 조사도 아울러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체장애인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과제, 주거, 의료, 취업, 장애인자립지원법 등과 결부된 조사 항목의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견 및 감상문은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이번 품질진단의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다만, 동경도의 장애인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차이는 조사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개선점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의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실태조사 개선의 시사점

미국의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OECD의 “질병, 장애, 노동 조사”, 일본의 “장애인백서”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모든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각종 조사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에 부합하게 통계 자료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의 결과를 중복재생산하는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조사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이에 부합한 자료가 실제 생산된 바 있는데, 그것이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통계집”이다. 이는 일본 장애인백서와 유사한 체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 이 통계집에서는 현재 생산되어 있는 장애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전반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한편, 장애유형·등급·성별·연령 등 기준에 따른 하위 장애인집단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는 국내외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과의 비교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최신 장애인정책의 동향의 소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의 삶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는지는 장애인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비교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문제의 소재와 그에 따른 욕구의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러한 비장애인과의 비교가 국내적 상황에서만 종료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동향과 표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진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제 2절 발전전략

지금까지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의 품질진단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통계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이번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 및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와 당사자단체 등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계 용역 수행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은 조사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비장애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수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조사시에는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인 5466명과 비장애인 11만3840명 등 총 11만9306명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장애인의 소득·소비실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가 전체 조사대상자(11만9306명)의 95%(11만3840명)를 비장애인으로 정한 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매년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실태조사시에는 예산이 삭감하여 8억원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감사원에서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로 조치한 통계청의 '가계조사'가 과연 미등록 장애인들의 실태와 그에 따른 욕구 파악에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

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이 통계의 세부 목적으로는 국민소득추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http://survey.go.kr/hies/>). 이러한 가계동향조사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사에서 국민이란 대다수의 비장애인을 의미하는 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곧 비장애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 장애의 경감 내지 해소의 욕구가 강한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있어 아동기 때부터의 장애등록은 희망의 포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애라는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장애인등록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예로 정신장애의 하나인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실제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몇몇하게 공표하고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생활 실태가 어떠한지, 그에 따라 어떠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현재적(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잠재적(미등록) 장애인의 실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조차 예산의 낭비라는 이유로 조사비용이 삭감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그 이유로 장애차별이론의 하나인 정책부재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부재이론은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정치적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기보다 문제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무시되거나 비중이 적게 다루어짐으로써 장애인들이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권선진, 2008: 51). 이에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장애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때 비로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장애인실태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2. 조사결과물예의 접근성 강화

본 통계 이용자들이 제기한 통계 결과물예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자료 유포 및 접근의 폐쇄성이다. 장애인실태조사의 발간형태는 대체로 인쇄물로, 표적집단면접이나 외부진단평가 공히 웹 사이트 공개(음성파일 포함)나 CD 등 이용자가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공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 자료 이용시 통계작성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가통계를 용역수행기관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장애관련 조사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것에 비해 매우 폐쇄적이며, 그 결과 자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완료와 공표까지의 갭이 다소 길며, 공표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장애가 매우 다양하면서도 중복장애의 경향이 점점 농후해지는 현실에 있어 조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기관에서 세세히 분석까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원자료는 코딩과 즉시 공개하고, 그 활용에 관해선 해당 관계자들에게 맡겨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공표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기에 있어서는 조사완료부터 공표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당해년도 정책입안시에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에 대해 그 세부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 항목의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조사 내용의 충실성 강화

장애인실태조사가 시대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그 조사 내용이 충실히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장애

의 생애주기별 조사 설계를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본래 성인 장애인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에 대한 조사 항목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육·교육(장애 아동·청소년)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진전되는 실정 속에 이들 양 극단의 연령에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그에 따른 욕구 파악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조사 시점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조사 항목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이들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사항목의 유연한 변화 도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개정 작업이 없이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질문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18조의 제 9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규정이 가져야 할 명확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적극적인 해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보장서비스의 확충의 정도는 국가마다 시대마다 나아가 정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조사의 연속성과 시계열적 분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명문화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시행령 18조 9항을 10항으로 옮기고, 9항에는 “장애인을 둘러싼 국내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1항에서 8항까지의 규정 중에 기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타 장애인실태조사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4. 장애인관련 통계의 통합적 이용을 통한 효율성의 강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그럼에

따라 장애인실태조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형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실 상황에서 장애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기존 조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차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분야 국가통계는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장애분야조사통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계생산기준도 자료마다 달라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생산되는 각종 장애분야통계의 경우는 정확도나 시의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이들 자료는 장애분야 특정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피상적 현황파악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생활분야 전반을 아우르면서도 장애인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세밀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체계화작업이 필요하다(장애인개발원, 2009).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의 횡적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누가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중복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와 그 욕구의 다양함으로 인한 관계 부처의 다양성에서 시사되듯이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기관 사이의 연계는 불가결하다. 예를 들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미등록 장애인에 관한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 2에 근거). 단, 이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료활용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밀접한 자료 공유로 일정 부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실태조사 개선의 시사점

(1)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국민건강면접조사가 1957년 이래로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는 동안, 조사 내용은 약 10~1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다. 1996년에는 대대적인 설문지의 개정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판 질문은 1997년에 수행되었으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면접조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국민건강면접조사는 국민의 일반 질병에 관한 것을 질문하지만 장애 자체만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이 조사의 장점은 장애인만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 나타나는 사실이 장애인만의 특성인지 비장애인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알 수 없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가 매우 수월하며,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제시에 유용하다는데 있다.

(2) OECD “질병, 장애, 노동” 조사

장애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적 정책 분야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의료적 상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로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핵심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된 수입원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장애수당과 질병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적 건강 상태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노동시장 참가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장애 수당의 청구자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 건강, 수당 체계의 실패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이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이 분야에서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기 위

해 더욱 잘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OECD에서는 선정된 몇몇 국가에서의 질병, 장애, 노동에 대한 세 가지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사는 2006년에 출간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후에 시리즈로 일련의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보고서인 2006년판의 목차를 살펴보면 이 조사는 한 국가에서 자국민 중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일반적 조사가 아닌,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문제의 주요 토픽을 다루고자 하는데 큰 특징이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문헌자료는 총 61개로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3) 일본 <장애인백서(障害者白書)>

장애인백서는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제11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개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연차보고서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장애인백서는 전년도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해 강구되는 시책의 개요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2010년 백서는 17번째에 해당된다. 장애인수의 전체 상황, 삶, 교육, 취업, 수입,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관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 조사방식과 달리 직접 조사가 아닌 기존의 통계조사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와 차별화된다.

장애인백서는 또한 작성년도의 국내외 장애인시책의 변화를 그 때 그 때마다 반영하는 특색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는 장애인권리조약의 체결에 즈음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사항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 조약이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조약으로 현재 가능한 조기의 체결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최근의 장애인시책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기본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따라 2008년도를 중심으로 정부가 강구해온 장애인시책의 구체적인 실천상황 등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OECD의 “질병, 장애, 노동 조사”, 일본의 “장애인백서”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모든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각종 조사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에 부합하게 통계 자료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의 결과를 중복재생산하는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조사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이에 부합한 자료가 실제 생산된 바 있는데, 그것이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통계집”이다. 이는 일본 장애인백서와 유사한 체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 이 통계집에서는 현재 생산되어 있는 장애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전반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한편, 장애유형·등급·성별·연령 등 기준에 따른 하위 장애인집단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는 국내외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과 비교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최신 장애인시책의 동향의 소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의 삶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는지는 장애인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비교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문제의 소재와 그에 따른 욕구의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러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비교가 국내적 상황에서만 종료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동향과 표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진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로드맵

지금까지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 그리고 발전전략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의 발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로드맵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작성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25> 장애인실태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로드맵

구 분	개선과제	추진내용	기대효과	비고
단기과제	조사시기의 개선	10월~11월에는 다음 해 장애인복지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 시행을 3월 이전에 실행하도록 검토.	정확성/명확성 향상	용역사업 발주(3월), 6월 본조사 실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용자 의견수렴	의료관계자 위주의 자문위원회를 탈피해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렴	관련성 향상	-
	자료 접근경로의 다양성 확보	웹사이트 및 통계관련 포털사이트의 발간물 수록, 향후 발간물 형태 다양화 실천(CD, 음성파일 제공 등)	접근성 향상	-
	원자료 무상 제공	PDF가 아닌 이용 희망자가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공	접근성 향상	원자료 무상제공대상을 점차 확대
	용어의 설명	설문지와 발간물에 용어의 설명 부분을 별도로 작성(부록 및 개별 자료 첨부)	이용자 만족도, 정확성 향상	-
중·장기 과제	예산증대	조사대상에 미등록장애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더불어 기존 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도 일정 필요함.	일관성, 정확성 향상	복지부 검토 필요
	설문지 보완 및 수정	설문문항 중 타 장애인관련 DB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조사 항목의 삭제와 중복되는 문항의 경우 다른 통계와 겹쳐지지 않도록 보완 및	일관성, 비교성 향상	-

		보충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사 실행		
	국제비교 및 시계열 분석 가능한 통계 연구	국제비교 연구 추진 및 시계열 분석 가능 자료 지속적 생성	비교성 향상	-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조항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를 개정하여 타 조사와 중복 항목을 조정함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항목 추가	관련성 향상	복지부 검토 필요
	장애관련정보의 통합 관리 체제 구축	장애인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 기관의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이 경우, 통계청의 주된 역할 기대.	관련성, 일관성 향상	작성기관의 독자적 개선 사항이 아님

참 고 문 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kr/>
통계청(2010), 정기통계품질진단 핸드북.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06), 한국통계조사현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survey.go.kr/hies/>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장애인통계집.
知的障害児·者基礎調査 <http://www.mhlw.go.jp/toukei/list/101-1.html>
厚生労働省共生社会政策総括官
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2hakusho/gaiyou/index-pdf.html
身体障害児·者等実態調査 <http://www.mhlw.go.jp/toukei/list/108-1.html>
障害者雇用実態 <http://www.mhlw.go.jp/toukei/list/111-1.html>
東京都障害者実態調査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chosa_tokei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 <http://www.cdc.gov/nchs/nhis.htm>
OECD Sickness, Disability, Work Project <http://www.oecd.org/document>

부 록

- 부록 1. FGI 결과표
- 부록 2.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 결과
- 부록 3. 표본설계 진단결과



부문(주제)	사회 V	
통 계 명	장애인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32호	
작성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품질진단팀	FGI일자	2010년 5월 28일
	연구원	조원일
	책임연구원	김태헌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p>◦ 참석자 선정방법</p> <p>장애인복지전공 교수 및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 운영 정책 수립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선정</p>	<p>◦ 참석자 현황 (집단 구분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하고 인원 원수를 각각 기입)</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 이용자 집단 -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_____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 _____4_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원 _____2_명 - 기타 _____명</p> <p><input type="checkbox"/> 일반 이용자 집단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p>
◦ 실시 장소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 소요 시간	약 2시간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p>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한 설문지를 미리 배포하여 토론에 차질 없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통계품질의 6가지 차원 설명을 시작으로 논의함</p>	◦ 사회자 : 조원일
	◦ 기록자 : 오제호
	◦ 관찰자 : 유수덕
	◦ 녹음·녹화 여부 : 0

제2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 의견 내용	핵심어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5년마다 조사를 했는데, 2008년 장애인복지법 제31조(조사) 개정으로 3년 주기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한 주기라고 봄. · 반면, 우리나라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며 장애의 특성(역동성,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9월부터 3개월 가량 조사 후 다음 해 주로 4~5월에 발간함. 이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조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타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2년으로 단축할 필요성 있음 · 타 장애인관련조사 주기도 참조해야 함. 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킴.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등은 조사주기가 모두 1년임. · 조사기간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표를 신속히 하는 것. 작성기관에서 모든 분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원자료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분석하는 것은 각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것. 	시의성 / 정시성, 문항조절 필요
통계생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장애인출현율을 파악할 수 없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판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경우, 등록을 주저하는 어린 연령층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등록장애인은 물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포함해야 함. 1단계의 판별조사가 필요함. · 만일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통계청 자료에서 장애인의 출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형식적으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성, 정확성, 비교성, 의견 수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의료관련 전문가(의과대학교수, 병원 의사)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장애인정책의 소비자인 장애인의 참여가 미흡. 특히 장애인 실태조사가 기존의 장애관련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 활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생기는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 2008년 조사는 2005년 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지만, 2005년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어떻게 담아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 · 이용자 욕구 반영 관련하여 장애인실태조사는 정책 입안자 혹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실태조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임. · 조사원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제시가 미흡. · 2008년 조사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응답비율이 23.7%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함. 또한 시설조사의 경우 우편설문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직접방문을 통한 조사로 변경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 · 작성 주기 동안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를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서 제시. 단, 조사항목의 변경은 장애인실태조사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전제. · 조사항목 개발 시부터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도출해 낼 수 있는 조사항목을 개발해야 하며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실태조사 계획단계부터 종료까지의 전 단계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조사원 교육일정표 및 교육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있음. 근본적으로는 실태조사 예산 확대를 통해 조사원수를 늘리고 조사방법(위에 언급한 CAPI 활용 등) 개선을 통해 조사기간 단축이 필요함 · 무응답의 이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 시설조사의 경우 보고서상에서는 우편조사로 실행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방문과 병행하고 있음. · 조사방법 관련하여 장애인실태조사는 현재 직접 방문 면접조사 시 종이조사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처럼 CAPI(Computer-assisted 	
--	---	--	--

		<p>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 또는 노트북에 내장된 전자조사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시킬 필요성 있음. 이를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 정확도 및 조사상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p> <p>·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실태조사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이는 정부 발주 방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기관은 발주처의 의지를 관철 시키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실태조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구성에 필수 대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p>	
<p>활용의 편리성</p>	<p>· 발간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자로 발간된 후 받아보고 활용하고 있음. 문제는 통계활용에 있어 원자료를 받기가 어렵고, 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한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예를 들어 16개 시도별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않음.</p> <p>· 프린트 형태의 책자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원자료의 무상공개가 필요함.</p> <p>· 장애인실태조사통계 자료를 주관해온 부서와 관련 연구자들이 발표 전부터 자료를 독점해왔으며, 이들에 의한 극소수의 연구결과만 산출되고 있는 실정. 또한 실태조사 발표 후엔 국책연구기관이 유료로 판매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이는 다른 기관의 무상 원자료 공개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어 연구자가</p>	<p>· 통계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책자, 시디롬과 웹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과제로 산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함.</p> <p>· 각 장애유형의 세부장애영역의 특성이 매우 상이한 경우는 전문화된 별도의 조사가 필요.</p>	<p>시의성 / 정시성 정확성 접근성 / 명확성</p>

	<p>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15개로 분류된다고 하나, 각 유형의 세부장애에 대한 통계는 알 수 없음.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으로 세분류하는 데, 뇌성마비와 뇌졸중의 차이는 매우 큼. 뇌병변장애의 고용실태 등을 연구하면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제외 인구인 뇌졸중장애인이 포함되어 올바른 연구의 수행이 불가능. 		
<p>내용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조사 대상의 상당부분은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하의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의 경우 미미하게 다루지고 있음. · 장애인실태 조사의 주요 내용은 장애특성, 원인,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항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다만 2008년 실태조사는 등록 장애인 DB를 사용하고 있어 기초 데이터를 위한 조사는 의미가 없음. · 세부장애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없음. · 장애인실태조사의 접근성이나 활용성은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 노령 장애인(65세 이상)의 욕구와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해야 함. 또한 보다 강조되어야 할 조사 분야는 문화, 스포츠, 여가 등과 관련된 항목이며, IT 등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항목도 고려한다면 조사 시점의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유용할 것임. · 장애인 등록 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적일 수 있음. 즉. 단순한 욕구조사는 장애인등록제를 개선해서 등록과 동시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 관련하여 기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고용((장애인고용패널, 사업체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0년 실시 예정 등), 편의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복,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등), 정보(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사 부분은 축소하고 조사 시점 기준으로 장애(인) 관련 주요 이슈와 관련되는 분야의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p>관련성, 정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자가 관심 주제 혹은 영역별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이를 위해선 웹 상으로 통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 경우 원자료는 무상공개로 해야 함. · OECD가 장애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조사가 있음. 이 조사는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고 있음. 1.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2. 자기보고식으로 보고한 장애인.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조사항목)을 마련하여 등록장애인은 물론 비등록장애인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함. · 다른 영역(일반국민, 청소년, 여성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항목과 장애특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구분해서 조사통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
--	--	---

※ 녹취록 및 질문지 별첨

제3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 요구사항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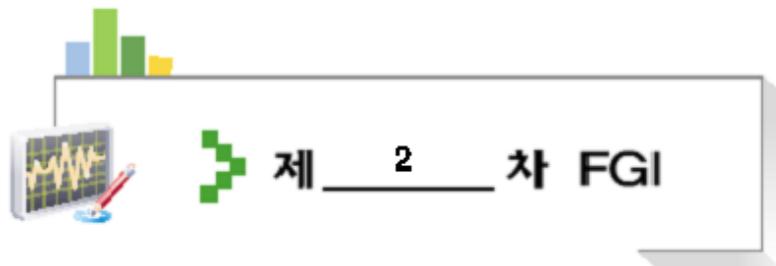
· 주요 토의 내용

- 2008 장애인실태조사는 7번째 공표된 통계로서, 이번 통계가 이전의 통계에 비해 결정적인 결함을 갖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등록장애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또한 국가통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편리성에 있어 원자료를 유상 공개함으로써 다수의 연구자 및 장애당사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조사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정세의 변화나 그에 따른 장애인계의 욕구나 관련시책과의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음.
- 조사 시기 및 대상별 접근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현재의 방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 통계 자료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 요구사항 정리

· 주요 개선의견

- 1) 조사대상에 미등록장애인 포함: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 취한 방식과 같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장애추정률의 산정 등 본 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임.
- 2) 조사연령대의 확대: 주된 조사 대상이 성인 장애인임으로 인해, 연령이 낮은 장애아동이나 연령이 높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욕구의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
- 3) 조사 기간 및 공표 기간 단축 필요: 3개월여에 걸친 조사 기간은 조사원에 의한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방식 등을 활용하면 조사 기간 및 공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또한 당해연도에 조사한 사항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발표함으로써 시의성에 부합할 수 있음. 현재의 공표 일정으로는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의 공백이 불가피함.
- 4) 발간물 이용의 접근성 확대: 장애인복지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통계인 만큼 보고서뿐 아니라 웹페이지, CD, 언론보도물 등 다양한 발간물형태가 필요함. 이 때 원자료도 무상으로 공개해야 함.
- 5) 이용자 의견 반영 : 설문지 개발에서부터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현재는 의료관계자들의 자문에 치우치고 있음.



부문(주제)	사회 V	
통 계 명	장애인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32호	
작성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품질진단팀	FGI일자	2010년 5월 29일
	연구원	조원일
	책임연구원	김태헌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선정방법 <p>장애인복지관련 실무자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을 통계이용자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현황 (집단 구분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하고 인원수를 각각 기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 이용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_____명 교수 _____명 연구원 _____명 기타(사무국장, 소장) _____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이용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생 1 _____명 대학생 _____명 일반인 5 _____명 기타() _____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 장소 <p>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시간 <p>약 2시간</p>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p>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한 설문지를 미리 배포하여 토론에 차질 없이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통계품질의 6가지 차원 설명을 시작으로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자 : 조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자 : 오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녹화 여부 : O

제2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 의견 내용	핵심어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장애인 인의 수가 빠르게 급증(약 43만 8천명, 25.8%증가)하는 가운데 3년 주기를 유지할 경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즉각적인 반응이 곤란하게 됨. 조사주기는 적절하나 공표시기를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당해년도 10월 또는 11월로 삼음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이 필요. 주기를 줄이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적어도 자료 수집부터 공표시기까지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함. 3년 주기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2년 주기로는 욕구조사 정도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법도 있음. 복지 패널의 예에서처럼 장애인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했었을 때에는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 	시의성 / 정시성, 문항조절 필요 관련성, 정확성, 비교성
통계생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만 실태조사를 하면 경계선 또는 장애가 있지만 등급을 받지 않은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음. 장애인실태조사통계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기 보다 정책 또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설문지의 성격이 있음. 조사시점을 제시할 때 면접조사에 대한 기간은 제시되어 있으나, 우편 조사를 실시한 기간에 관한 정보는 누락. 안명장애 등 소수유형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0명 미만의 인원이 추출이 돼서 응답을 하여 그들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심.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를 이용하는 미등록 장애인에게도 실시해야 함.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이 살아온 환경, 지역별 특성(농어촌, 도시지역 등)에 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함. 또한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흐름, 문화적 배경,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함. 통계조사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길 요망. 소수유형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례추출보다는 최적분할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유형의 인원수 대비 10%가 아닌 20~30% 이상으로 추출을 하여 표본수를 늘려 의견을 청취해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의견 청취 필요

	<p>인 질문은 지양해야 함. 예를 들어 지체 장애인이 느끼는 이동의 불편함과 청각장애인이 이동의 불편함은 근본적으로 다름.</p> <p>·장애가 경증 중증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양하여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음.</p> <p>·장애유형이나 등급같은 부분들이 조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항목들은 기존 조사와 중복되고 있음.</p> <p>·구조화된 설문 문항으로 양적인 자료들로만 추출하는 등 전적으로 양적조사로만 조사하는 것은 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됨.</p> <p>·부록의 설문 문항 중 질문 의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존재. 예를 들어 527쪽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족, 이웃, 활동보조인 등 다양한 개인적 공적 지지체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다중응답을 해도 되는지 가중치가 있는지 알 수 없음. 이럴 경우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임.</p>	<p>할 수 있을 것임.</p> <p>·표본 추출에 있어서 15개 장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사가 필요함.</p> <p>·조사 항목에서 의료적 측면 내지 직업적 측면 등에서의 특정 관점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문항 조정.</p> <p>·DB자체가 등록장애인 DB를 가지고 추출한 것이라면 등록장애인 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를 풀어낼 때 필요한 내용들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조사가 되었으면 함.</p> <p>·각 장애유형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임.</p>	
<p>활용의 편리성</p>	<p>·보고서의 양이 방대하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 또한 웹 사이트에서의 이용이 수월치 않음.</p> <p>·보고서 결과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또한, 자료를 풀어서 글로 표현해 놓을 때, 데이터와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응답 분석 자체가 무리인 경우가 있음. 예를</p>	<p>·관련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볼 수 있도록 엑셀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편리. 발간물과 웹사이트 공개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꼭 필요함. 이 때 원자료도 공개해야 할 것임. 발간물의 경우 각 복지기관에 무상배포가 필요함. 이 때 두꺼운 발간물보다 CD로 배포함이 적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파일로도 지원해야 함. 과년도 조사까지 포함해서.</p>	<p>시의성 / 정시성 정확성 접근성 / 명확성</p>

	<p>들어 기타에 응답한 비율에 40%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음. 다른 예로 표18에서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에 29~38세에는 어려움 없음이 46.2%.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한 명시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장애인들의 반 가까이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복지에 오히려 해악이 됨.</p> <p>·유형별 등급에서 비례추출을 적용하면 저소득과 또는 수급과 비수급에 대한 비율이 공정하게 분할이 될 것인가는 의구심이 큼.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미응답자들에 대한 결측치도 있을 터, 소수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가능성.</p> <p>·복지패널의 경우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원자료마저 입수 가능.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복지부나 보사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이게 활용도가 커질 수가 있을 것.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에서는 저조함.</p> <p>·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이 조사를 보사연에서 계속 독점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p>	<p>· 전국적인 차원의 조사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조사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함. 보사연에서는 전국적으로 주관을 하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수치조사를 해서 그것을 모두 활용하였으면 함.</p> <p>·내용분석에 조금 더 철자를 기해야 하며, 설문 구성 또한 데이터 사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작성해야 할 것. 모호한 부분은 각주를 적극 활용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도 고려. 또한 실태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요망.</p> <p>·비례추출을 할 때 유형 등급만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비례추출을 하면 그 장애인들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파악이 용이할 것.</p>	
<p>내용의 충실성</p>	<p>·장애인의 생활환경, 직업활동, 생애</p>	<p>·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표본추출, 정확한 코딩, 코딩자료공개 등이 필요. 또한 보고서 작성</p>	<p>관련성, 정확성</p>

	<p>주기 등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실태조사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됨. ·이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활용 한 다고 할 때 현재의 질문은 너무 일 반적인 사항들에 그치고 있음. ·대체로 정부에서 어떤 복지서비스 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수치를 얻 기 위한 조사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 됨. ·새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루지 못하 고 있음. 	<p>을 장애유형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활용하기가 수 월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참여가 많은 장애인들은 비참 여 장애인과 욕구가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문 화 해야 할 것. ·개별면접조사시 조사원의 교육은 필 수적인데, 조사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 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조사 원이 파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서에 제시해야 할 것임. ·매번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 들은 대폭 정리하고, 조사 당시 중요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 으로 조사. 예를 들어 2007년도부터 서비스 제공분야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사업관련 문 항을 심층적으로 개발.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조사항목의 반영이 필요. 예를 들어 이동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제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 한 조사 문항이 필요.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가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 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가 되어야 할 것. 	
--	---	---	--

※ 녹취록 및 질문지 별첨

제3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 요구사항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 주요 토의 내용

- 자료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특히 방대한 발간물로 배부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찾기 어려움
- 단순 현실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음.
-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사 항목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를 알 수 없음. 질문지 설계 시점부터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부 질문 항목은 질문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값에 반 가까이 응답이 몰리는 등 설계 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함.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 요구사항 정리

· 주요 개선의견

- 장애의 경증과 중증을 판단할 때 의학적 접근만이 아닌 직업적 장애정도, 사회적 접근(차별 해소 등)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반영해야 함.
- 9-11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해 4월경에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고 있음. 시의성의 측면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음. 또한 장애인관련 정책입안이 10월부터는 이루어지므로 조사시기를 앞당기고 정책입안 전에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인쇄물이 아닌 cd로 배포해야 하며, 음성파일의 제공도 고려할 필요. 유료 원자료는 무료로 해야 함.
- 설문조사에 응하는 장애인의 특성상 유효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원 교육의 보완책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통계 진행 이전에 연구방법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전문가 외에도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의견 청취가 필히 진행되어야 함.
-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이미 기본적인 정보는 입수한 상태이므로 일반적 조사와 더불어 주요한 쟁점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배경변인별로 보다 심층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부	문	통계 V
통	계	명
승	인	번호
작	성	기관
품질진단팀	연구원	조원일
	연구보조원	오제호

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p>✓ 현장방문, 전화 및 이메일로 수시 문의 등. 상세는 아래 표 참조</p>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5/14	강○○연구원	경기대학교	조사방법에 대한 개괄적 면담
5/28	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원 교육, 피조사자 현장 조사 요령
6/4	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유형에 따른 조사방법
6/11	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체적인 문항의 응답 일관성,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과 그 이유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 문	문제점	개선 의견
실사준비/ 교육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원 육성이 어려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교육의 철저가 필요. 구체적으로는 의료직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조사원 수당의 인상
정확성	15가지 장애유형이라도 그 세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질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과 그 세부장애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장애까지 세분하여 조사 -주로 의료 관계자에 의한 조사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육 필요
정확성	피조사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사항목이 과도하게 많음.	장애관련 타 통계의 활용으로써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조사항목의 대폭 삭감
정확성	종이조사지로 입력시 오류와 과도한 시간 소요 문제	현장에서 장애유형별로 표준화된 컴퓨터 자료입력 프로그램의 도입
일관성	문항에 일관성 있게 응답하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의견의 배제 문제	피조사자인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확실히 응답할 수 있는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분류하여 분석, 확인
관련성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조사 목적에 부적합. 또한 일부 문항을 상호 유추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미등록장애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개인정보는 광역시, 도 차원의 제공만으로 충분. 그 외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연구자 서약 후

제3부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통해 현장조사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기술

1. 15가지 장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못하여 조사 항목의 이해가 부족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의 경우 신체적 장애의 일 유형으로 정신적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각 정보의 조기 습득 결여로 인한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필답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수화통역사에 의한 조사항목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 응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등, 조사원 교육시 의학적 측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문적 지식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의 제2장 장애특성은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을 조사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5가지 장애의 세부 장애는 매우 개별적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하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에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의 세 가지 세부 장애가 있는데, 뇌병변장애의 고용실태 등을 조사할 때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제외 인구인 뇌졸중장애인이 포함되어 버리면 올바른 고용실태의 파악이 어렵다. 또한 이들 세 가지 세부 장애는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닌 그 세부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 많은 질문 항목에 따른 기입 오류의 가능성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총 13장의, 장애유형별로는 40쪽(총 54쪽) 가량의 방대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사원들은 시간에 쫓기거나 당해 장애인과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확보하지 못한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타 장애관련 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줄이고, 조사원들에게는 충분한 조사 시간의 부여와 함께 종이 조사지가 아닌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 기법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	문	통계 V
통	계	장애인 실태조사
승	인	제11732호
작	성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품질진단팀	연구원	이기재
	연구보조원	이하람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표본보고서 등), 면담자, 면담일시 등 기술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표본설계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조사 개요

조 사 명	장애인 실태조사	
작성기관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 수 / 표 본 조 사	전수()	표본(0)
표 본 설 계 주 체	자체설계(0)	외부용역() 【용역사업자: 】
조 사 목 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	
조 사 대 상	-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	
조 사 방 법	- 장애인 개별 조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 우편조사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 - 조사모집단 :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개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 대상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6개 시·도별 읍면동을 1단계 추출단위(PSU)로 정하여 각 지역별 읍면동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 읍면동을 추출함 - 208개의 표본 읍면동 추출하고 이들 표본 읍면동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층화 이중추출(stratified two-phase sampling) 방법 적용 ○ 지역별 표본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층별로 배분된 표본수를 다시 지역별로 장애인 규모에 따라 할당함. 지역별로 표본을 재배분한 이유는 지역별 장애인 규모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개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개 표본 읍면동에서 14,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12,342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 2008년 9월 6일~11월 30일(약 80일) 중에 총 7,000명 현지 조사 완료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68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 대상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 872개 시설(81.6%) 거주자 67,11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1.4%인 34,4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raking비 조정을 통해서 산정되었음 -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추출율의 역수임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대해 지역별 2원 교차표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raking비 조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 조정을 실시
추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값, 표준오차 및 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1, 2, \dots, L$: 층을 나타내는 첨자 · $i=1, 2, \dots, n_h$: h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 $j=1, 2, \dots, m_{hi}$: h층의 i번째 집락 내의 장애인을 나타내는 첨자 · n_h : h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동 수) · m_{hi} : h층의 i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장애인수

· $n = \sum_{h=1}^L n_h$: 표본 집락 총수(표본 동의 총수)

· $m = \sum_{h=1}^L \sum_{i=1}^{n_h} m_{hi}$: 총 표본 장애인수

· w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의 가중치

·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

· f_h : h 층의 조사구 추출률

$$\tex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 $y_{hi.} = \sum_{j=1}^{m_{hi}} w_{hij} y_{hij}$

· $\bar{y}_{h.}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text{CV}(\bar{Y}) = \frac{\sqrt{\text{var}(\bar{Y})}}{\bar{Y}} \times 100$$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모집단	- 표본추출틀의 포함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전국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 등록 및 미등록 장애인에 속하는 모든 장애인을 찾아내야 노력도 필요할 것임
표본추출방법	- 현행 표본 읍·면·동의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을 적용하고 있음. 읍·면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표본 읍·면·동의 추출방법을 해당 읍·면·동의 등록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추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가중치	- 가중치 작성에서 설계가중치와 raking비 조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였음. 단위무응답을 가중치 작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조사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추정과정에서 무응답의 처리와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단위무응답(개체무응답)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이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비표본오차	무응답 현황의 특성별 파악 및 처리	- 조사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무응답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비표본오차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임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표본설계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방안, 발전전략 등 제시

-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표본설계는 모집단, 표본추출틀, 층화, 표본크기 결정 및 배분, 표본추출법, 가중치 작성, 추정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전국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 등록 및 미등록장애인에 속하는 모든 장애인을 찾아내야 노력도 필요할 것임

- 현행 표본 읍·면·동의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을 적용하고 있음. 읍·면·동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표본 읍·면·동의 추출방법을 해당 읍·면·동의 등록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추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조사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추정과정에서 무응답의 처리와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단위무응답(개체무응답)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이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조사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무응답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비표본오차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임